

인 소년조사관은 검임조사관을 포함하여 1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소년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원은 매년 4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여명의 조사관으로 충실한 조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sup>14)</sup> 그러나 현재는 소년조사관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몇 년전까지 단 2명의 조사관이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현재에는 소년에 대한 조사는 전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의뢰하고 있다.<sup>15)</sup>

## 2) 외국의 조사제도

### (1) 일본<sup>16)</sup>

일본에서는 조사관에 의한 조사와 소년감별소에서의 감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조사관 조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임 가정재판소 조사관에 의해 수리선별 절차가 행해지고 그 후 이것을 받아 판사가 법적 조사를 한 이후에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내리게 된다. 담당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보호자 조회, 학교 조회, 피해자 조회 등을 서면으로 행함과 동시에 일시를 약속하여 소년, 보호자를 호출해 필요사항을 청취하게 된다.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에 의거해 인격진단, 사회진단이라고 불리는 종합적인 판단을 행하고 조사결과를 기재한 서면에 처우의견을 붙여 판사에게 보고한다. 소년조사기록은 법률기록과 분리되어 독립된 기록으로써 심판의 기록이 될 뿐 아니라 보호처분의 집행기관에 결정서와 함께 송부되어 소년의 처우에 참고가 된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험관찰제도가 있는데, 이는 조사관에 의한 조사와 더불어 소년에 대한 관찰이 실시되는 중간적 처우이다. 시험관찰은 소년을 가정에 돌려보내거나 적당한 곳에 위탁하여 가정재판소 조사관이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행하면서 소년의 행동을 관찰하고 소년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험관찰의 결과에 의거해 최종적인 처분이 결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시험관찰은 보호처분의 결정에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재판소의 조사관에 의해 행해지는 조사와 시험적인 관찰이 일체가 된 것이다.

14) 최종식, 앞의 논문, 552면

15) 이춘화, 앞의 논문, 569면 이하

16) 이춘화, 앞의 논문, 569면 이하

그것은 일반의 조사와 감별과 같이 정적인 소년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의 조사나 관찰이 아니고, 동적으로 국가가 보호적인 일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소년의 반응을 조사, 관찰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한가 또는 상당한가, 어떤 보호처분이 적당한가에 관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시험관찰은 조사의 일면을 가진 것이면서 보호처분의 실질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도 조사의 단계에서 시험관찰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고, 적정절차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험관찰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소년과 보호자를 가정재판소에 정기적으로 출두시켜 면접하거나 가정재판소 조사관이 소년, 보호자의 집, 근무처를 방문하거나 경우에 따라 편지, 전화 등의 통신을 이용해 하는 경우도 있다. 또 그것과 병행해 카운셀링, 심리검사, 작문, 일기지도 등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학교, 직장의 고용, 보호관찰관, 보호사, 아동위원 등의 원조, 협력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 (2) 독일

독일의 소년조사제도는 소년에 대한 검사의 조사절차를 도와주는 소년법원보조인(Jugendgerichtshilfe)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소년사건절차는 조사단계인 예비절차와 처분단계인 심판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년법원법에 따르면 소년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년법원보조인이 기소후 예비절차(Vorverfahren)에서 생활관계, 가족관계, 성장과정, 행장, 심적, 정신적, 성격적 특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조사한다(소년법원법 제43조). 소년법원은 발육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범죄생물학적인 조사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시설수용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도 있다(소년법원법 제73조). 소년법원보조인은 소년법원과 수사기관을 보조하고, 소년을 감독·원호하며, 소년에 대한 인격 및 환경조사를 행하고, 처분을 집행하기도 한다(소년법원법 제38조).

### 3) 조사제도의 문제점

형사법원에서는 범죄소년에 대해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명할 수 있다(보호관찰법 제26조). 그러나 판결전조사는 법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의 기관에 의해 행해지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판결전조사에 필요한 기간으로 말미암아 재판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에 대한 조사를 소년조사관, 전문가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를 위한 심리구조에서는 비행사실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소년과 보호자의 사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보호필요성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과정은 소년과 보호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그 다음에 행해지는 비행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sup>17)</sup> 실제로 보호처분유형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여부를 들 수 있다. 전체보호사건에 대해서 볼 때, 보호처분의 유형결정을 할 때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해당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가 아닌가의 여부이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 즉 보호자에게 가위탁된 소년은 최종적인 처분결정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처분인 사회내 비수용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은 상대적으로 엄한 시설내 수용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소년부 판사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소년이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구속되었는가의 여부가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sup>18)</sup>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제도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소년법원이 소년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년법원이 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의 진단과 의견을 참작하거나 병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sup>19)</sup> 소년조사관제도가 소년부 판사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는 조사관 인원의 부족과 함께 조사관 활동에 대한 소년부 판사의 신뢰성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법원별로 조사관 수는 많아야 2명 정도이며, 이러한 소수의 인원마저도 가사조정조사업무나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판사가 소년조사관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소년조사관은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법원일반사무적인 법원서기관 혹은 사무관 등이 조사관 겸임 발령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년조

17) 김동립, 소년법의 문제점과 입법에 관한 논의, 형사정책 2000년 제12권 1호, 125면 이하  
 18) 김지선, 앞의 논문, 105면 이하  
 19) 오영근/최병각, 100면

사관들은 소년을 법원에 소환하여 면접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관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sup>20)</sup>

[표] 각급 법원별 소년조사관 현황<sup>21)</sup>

법 원 별	소년조사관인원수	비 고
서울가정법원	3	
인천지방법원	1	
수원지방법원	1	가사, 가정보호조사와 겸무
춘천지방법원	1	가사, 가정보호조사와 겸무
대전지방법원	1	가사, 가정보호조사와 겸무
청주지방법원	1	가사, 가정보호조사와 겸무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2	가정보호조사와 겸무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1	가정보호조사와 겸무
창원지방법원	1	가사, 가정보호조사와 겸무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1	가정보호조사와 겸무
전주지방법원	1	가사, 가정보호조사와 겸무
제주지방법원	1	가사, 가정보호조사와 겸무
계	15	

## 2. 소년분류심사원제도

###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실태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 중 소년부 판사는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 심리를 위한 신병확보를 위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해 임시조치에는 세 가지 처분이 있으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제외한 조치는 실제 신병확

20) 김지선, 앞의 논문, 78면 이하  
 21)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0년



보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소년의 신병확보를 위해서 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보호소년의 위탁결정현황을 살펴보면, 1989년에 분류심사원에의 위탁비율이 접수된 보호사건의 47.5%에 불과하던 것이 조금씩 증가하여 1991년에는 51.5%를 차지하였고, 1992년에는 이례적으로 모든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 1992년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비율은 1993년 99.3%, 1994년 90.8%로 소폭 감소하다가 1995년과 1996년에는 80% 수준으로, 1997년에는 70% 수준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1999년에는 보호소년 중 53.3%만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 그러나 서울분류심사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위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8년과 1999년에 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80-85% 정도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sup>22)</sup>

## 2) 소년분류심사원제도의 문제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는 것이 보호처분은 아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될 경우 소년은 1개월 또는 그 이상 구금된다. 보호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적인 관찰과 신병의 보전에만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유효한 시간을 무위로 소비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단순히 시간만 소비하게 된다면 본래 받아야 할 보호를 박탈당했다고 하는 면에서 인권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sup>23)</sup>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이 보호처분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위탁기관이라고 할 때, 소년법원에서 처리하는 소년은 촉법·우범소년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sup>24)</sup>, 비행사실에 대한 심판의 개연성이 미약한 경우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22) 김지선, 앞의 논문, 45면

23) 이춘화, 앞의 논문, 573면

24) 현행 소년법상 비행소년을 소년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 자는 검사와 형사법원의 판사, 그리고 경찰서장과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다. 먼저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되거나 직접 인지한 소년범죄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형사법원은 검사가 일단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소년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찰서장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비행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통고할 수 있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실제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은 우범소년에게도 보호처분처리절차에서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보호주의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신체자유의 침해라 할 것이다. 즉,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수용위탁이 오히려 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보호라는 명목으로 소년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비행사실의 정확한 인정 및 소년의 보호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년보호처분을 위한 조사단계인 소년분류심사원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일반형사절차에서 마찬가지로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sup>25)</sup>

## IV. 독일의 조사구금(Untersuchungshaft)제도<sup>26)</sup>

### 1. 구금요건

소년형을 선고받는 다수의 청소년들은 소년형의 선고 이전에 이미 조사구금의 단계를 거친다. 평균적인 구금일수는 2개월-3개월이며, 조사구금을 위한 요건은 소년법원법 제72조 및 형사소송법 제11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조사구금의 집행은 '교육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소년법원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조사구금의 요건도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확정된다. 조사구금도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요건뿐 아니라 소년법원법에 의해 다음

25) 김동립, 앞의 논문, 125면

26) 독일 소년법원법에 의한 조사구금제도는 우리나라 미결구금의 형태인 구속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의 범죄소년에 대한 처리절차는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사절차와 소년법에 의한 보호절차로 구분되어 처리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소년법원법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소년법원법은 형사법의 특별법으로 '소년형법'인 것이다. 따라서 독일 소년법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년형(Jugendstrafe)은 우리나라 일반형사절차상의 자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소년법원법상의 처우, 예를 들면, 보호처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가해자-피해자-화해처우 등은 우리나라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독일의 소년법원법에 의한 소년사건의 처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구조를 감안해보면, 독일의 조사구금은 소년형 선고를 위해서는 구속의 형태로, 보호처분의 확정을 위해서는 분류심사의 형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유력한 범죄혐의

소년법원 판사는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행위와 범죄소년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력한 범죄혐의를 확정해야 한다. 단, 유력한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소년이 소년법원법 제3조에 의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sup>27)</sup>

(2) 구금요건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년사건처리절차에서는 일반 형사절차에서의 구속요건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도주하거나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는 때”를 조사구금의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90년의 통계에 의하면 조사구금의 경우 전체 구금소년의 96.1%가 도주하거나 혹은 도주의 염려로 인해 구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실제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재범의 우려는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1990년 증거인멸의 우려로 조사구금이 부과된 경우는 전체 구금의 3.8%에 지나지 않았다.<sup>28)</sup>

범죄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도주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소년구금의 중대한 요건이 되고 있다. 더욱이 형사소송법 제112조 이하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불명 혹은 무직이 도주의 우려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고려되고 있다. 동시에 소년법원 판사는 이러한 상황에 기인하는 사회성의 결함을 도주의 우려를 확정하는 요소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사항들이 조사구금을 확정하는 요건으로 고려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sup>29)</sup>

조사구금은 구금에 따르는 부작용과 구금요건인 도주하거나 도주의 염려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14-15세의 소년들을 구금하기 위해서는 추가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14-15세 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절차를 회피하였거나, 혹은 시설에서 도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거불명으로 구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14-15세의 소년의 경우에는 일

27) Albrecht, Jugendtrafrecht, S. 231; Ostendorf, Jugendgerichtsgesetz Kommentar, §72 Rn. 1  
28) Albrecht, S. 232; Ostendorf, §72 Rn. 2  
29) Albrecht, S. 232

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집단범’ 혹은 ‘연속범’의 경우에 구금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sup>30)</sup>

(3) 비례성원칙

조사구금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구금이 필요하고, 적당하고 적절해야 한다.<sup>31)</sup> 소년에게는 일반적인 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13조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형사소송법 제113조가 조사구금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요건으로 적용된다. 그밖에 조사구금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116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규정에 의하면 구금의 면제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구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다른 수단이란 보고의무, 주거제한, 주거지를 떠날 수 없는 지시 등을 말한다.<sup>32)</sup> 조사구금은 소년처리절차를 확보하는 목적과 구금에 따르는 해악을 비교·형량하여 절차확보의 이익이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년형의 선고가 유력한 범죄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구금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소년법원 판사는 구금을 청구한 서류에 기재된 범죄사항 및 그 이외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소년형의 선고가 충분히 개연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sup>33)</sup> 특히 조사구금은 그 구금일수 및 절차의 종기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구금된 청소년들은 “쇼크”와 감정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되기<sup>34)</sup>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4) 신속한 재판의 의무

조사구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심리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속성의 의무에 대해 소년법원법은 일반 형사절차에서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구금의 사건은 일반 사건과 분리하여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특히 서류심리에서 그 시간을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5)</sup>

30) BT-Dr. 11/5829, S. 33  
31) Brunner, Jugendgerichtsgesetz, Kommentar, §72 Rn. 2; Eisenberg Jugendgerichtsgesetz, Kommentar, §72 Rn. 3  
32) Albrecht, S. 233  
33) Albrecht, S. 233; Brunner, §72 Rn. 3  
34) Kury, S. 114  
35) Albrecht, S. 234



## 2. 보충성의 원칙

조사구금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조사구금은 “일시적인 교육명령(소년법원법 제71조 제1항)” 혹은 “다른 수단(소년법원법 제71조 제1항, 제2항)”으로 소년법원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일시적인 교육명령이란 소년법원 판사와 충분한 상담, 특별한 보고의무, 소년국(Jugendamt)의 대리인 혹은 소년법원보조인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동석하는 정기적인 만남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일시적 교육명령으로 범죄소년에 대한 심판절차가 확보될 수 있다면 조사구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해 소년법원 판사는 소년법원법 제72조 제4항에 의해 조사구금보다는 약한 처분으로 소년원조시설에의 일시적인 수용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수용명령은 새로운 범죄를 행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sup>36)</sup>

## 3. 구금의 집행

조사구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소년법원법 제93조 및 제2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19조를 준용한다. 그 이외에는 일반형집행절차를 위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음은 구금의 집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다.

### (1) 노역의 문제

소년법원법 제93조 제2항 및 구금집행규칙(Untersuchungsvollzugsordnung) 제80호 제2항에 의해 성인구금과는 달리 소년에게는 교육목적에 의해 노역이 부과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노역은 이미 인권법 제6조가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논쟁이 되고 있으며, 구금기간 동안의 노역은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sup>37)</sup>

### (2) 교육의 문제

구금상태에서의 교육은 기본법 제6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6) Albrecht, S. 235

37) Dünkel, S. 386; Eisenberg, §93 Rn. 18

기본법 제6조에 의한 친권의 제한은 자녀를 방임한 경우와 부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금상태에서의 소년에 대한 교육은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부모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금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sup>38)</sup>

### (3) 분리수용

소년법원법 제93조 제1항은 범죄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구금소년은 일반 재소자와 엄격하게 분리된 장소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엄격한 분리수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조사구금은 소년들의 인격발전에 지속적인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학계와 실무에서는 소년에 대한 구금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15세 이하의 소년에 대한 구금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sup>39)</sup>

## 4. 조사구금의 문제점

소년들에게 조사구금에서의 수용과 소년형의 선고에 따른 소년교정시설에의 수용에 대한 사고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 혹은 소년형에 의해 시설내에 수용된 소년들은 동일한 정도의 자유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침해는 엄격한 집행시스템에 일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년들의 정신적 발전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구금에 대해 Schaffstein/Beulke는 일종의 정신적인 쇼크에 의해 혼란상태를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시설내의 수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발달에 지속적인 침해의 상태가 야기된다고 하였다.<sup>40)</sup> 조사구금이 수용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유해성으로 인하여 구금의 제한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사구금은 이미 “실제적인 형벌”의 부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sup>41)</sup> 조사구금은 소년을 낙인찍는 것이며 재사회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구금소년들은 석방된 이후에 그들의 이전 교육장과 작

38) Albrecht, S. 239

39) Dünkel, S. 386; Kurz, S. 117 ff.

40) Schaffstein/Beulke, Jugendstrafrecht, S. 201 ff

41) Albrecht, S. 192; Seiser, S. 145



업장을 잃는다. 그밖에 “진정한” 범죄자와 접촉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며 동시에 “범죄에 감염”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sup>42)</sup>

###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속의 형태이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형태이든 소년들에게는 시설내에 수용되는 동일한 정도의 자유침해형태로 인지될 수 있다. 이러한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 형태의 시설내 수용의 남용을 억제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 ① 현행 체제하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의 인성 및 환경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구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서 모든 보호소년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보다는 현행 소년조사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년의 환경이나 성행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소년에 대해서 소년조사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년보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하겠다.<sup>43)</sup> 혹은 일본의 조사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험관찰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② 그러나 소년사건절차의 확보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부득이하다면,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소년법 제18조에서는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한 때”에 감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요건의 추상성은 실무에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은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소년의 건강과 복지에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실질적 요건으로 소년심판의 조건이 있을 것, 비행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을 것, 심리를 행할 개연성이 있을 것,

42) Ostendorf, §93 Rn. 8  
43) 김지선, 앞의 논문, 82면

소년의 주거부정이나 도주 또는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 조사와 심리를 위한 소년의 출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재비행방지의 필요가 있을 것, 결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다른 수단으로 달성될 수 없을 것 등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sup>44)</sup>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 형사절차에서의 구속사유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소년법 제55조 제1항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구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 ③ 형사절차에서 구속된 소년에게 구속적부심사청구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필요적 보석도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호절차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도 국선보조인을 선임하고, 보호자의 서약 등에 따른 필요적 위탁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5)</sup> 여기서 보조인이라 함은 소년의 보호절차에 협력하고 그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현행 소년법은 구소년법과 같이 “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심판부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17조). 따라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본인과 보호자뿐이며 소년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무지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보조인의 필요성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인보다도 더욱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소년법원이 전권을 맡고 있는 현행의 제도에서는 심리의 판단 및 결정의 적정을 기하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선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sup>46)</sup>
- ④ 독일의 경우와 같이 구속과 분류심사제도를 일원화한다면 소년사건에 대해 통일된 기준에 의한 조사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위 ①에서 제시한 구금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구금기관이 일원화된다면 소년형

44) 오영근/최병각, 앞의 논문, 97면

45) 오영근/최병각, 앞의 논문, 97면; 이에 대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소년에 대한 분류심사기능이 위축된다는 측면에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김준호/이동원, 비행소년의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년 38면).

46) 김동립, 앞의 논문, 127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소년보호이념에 충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단, 이러한 경우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이 현재의 구속기간보다는 길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 보호·교정기관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구축 방안

## Community Resource Building for the Protective and Corrective Agencies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崔玉彩**

### 〈目次〉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2.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
3. 좋은 멘터 되기

#### II. 이론적 배경

1. 사회교환이론
2. 자원봉사
3. 보호·교정기관
4. 지역사회자원
5. 지역사회자원 구축

#### IV. 지역사회자원 구축 과정

1. 사정 단계
2. 협의 단계
3. 훈련 단계
4. 활용 단계
5. 평가 단계

#### III. 사례

1. 교정협의회 운영

#### V. 결론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보호·교정을 주도하는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는 다양한 지역사회자원(community resources)을 동원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보호·교정에 직접 개입하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교도소 등의 실무자가 지역사회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곧 그가 개입하는 사례의 성패는



물론 이들의 변화 내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자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들은 이 같은 상 처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여러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호·교정기관에서의 지역사회자원의 필요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컨대 “범죄인 교화문제에 관해서는 종래의 국가 중심에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정진수, 2001) 견해, “교정현장은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기범을 기한다”(홍성열, 2002:34)는 제의, “원활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시의 사회봉사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희수, 2002:38)는 지적, “출소한 갱생보호사업에 민간인 참여를 촉진할수록 우리 사회를 밝고 안전하게 효율적인 방안이다”(홍봉선, 2002:162)는 시각,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할 책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등 우리에게 있다”(강영철, 2002:94)는 점, “범죄경력자에게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노호래, 2002:77)는 주장, “청소년범죄를 기 위해 개인차원의 서비스 이외에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 강조되듯이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성식, 2002:141)는 입장, “보호관찰 대 육구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소의 인력이나 실무자의 능력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합당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하다”(최옥채, 2002b:17)는 제안 등으로부터 보호·교정기관이 비행청소년과 의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호·교정기관은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을 대거 활용 있다. 그 실례로 보호관찰소는 범죄예방위원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전문화 교정을 개설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고, 소년분류심사원과 소 보호소년지도위원(방문지도분과, 어머니회분과, 종교지도분과)과 일반자원봉사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구치소와 교도소는 교정위원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의 소년원과 교도소의 실무자를 위한 전문성 강화 강좌가 지 의 전문 인력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선행연구와 현장의 실상을 통해 볼 때 보호·교정기관은 비행청소년의 교육·교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 자원을 갈망하고 있다.

서 보호·교정기관은 이들 지역사회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선행연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호·교정기관에서 지역사회자원을 효과·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기술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보호·교정기관과 관련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정진수, 2001), 교정기관에서의 연계 망 만들기와 활용에 관한 연구(최옥채, 2002a)에 불과하며, 이들 연구마저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가 ‘좋은 지역사회자원’을 발굴·교육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보호·교정기관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의 실무자가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지역사회자원 구축(community resource building)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연구 방법과 내용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보호·교정기관의 지역사회자원 활용과 관련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역사회자원 구축에 따른 주요 이론과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현장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보호·교정기관이 실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자원 구축 사례를 수집하고, 이들 기관의 실무자들이 강조하는 의견을 반영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실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연구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토대로 지역사회자원 구축을 뒷받침하는 주요 이론과 개념을 소개하고, 보호·교정기관 또는 관련 현장에서 실시한 지역사회자원 구축 사례를 정리하고, 이들 이론과 개념 그리고 사례로부터 보호·교정기관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 구축 과정을 모색하여 소개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지역사회자원 구축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자원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자원 구축을 뒷받침·설명하는 주요 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지역사회자원 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소개하고, 주요 개념으로서 자원봉사, 보호·교정기관, 지역사회자원 구축에 관해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 1. 사회교환이론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활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사회교환이론을 꼽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교환이론이 유·무형의 실익을 주고받는 두 사람 이상 사이 또는 개인과 환경간 교류에서 개인이 보이는 사회적 행동의 동기와 안정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사회교환이론은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호만스(George Homans)와 블라우(Peter Blau)가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호만스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 또는 사회적 교환을 설명하는 데 심리적·경제적 획득이 행위의 기본적인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블라우는 호만스의 입장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적 교환 관계는 보상을 가져오는 타인의 반응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교환은 기대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소멸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이시재, 1999:175). 이 같은 사회교환이론은 인간은 즐거움을 쫓고 고통을 피하며, 인간의 행동은 어떤 형태이든 이익이 생기는 쪽으로 결정된다(임태섭, 2002)는 점에 근거한다. 즉 사회교환이론은 인간이 순수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없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이런 맥락에서 호만스의 사회교환이론은 행동주의 원리를 밑바탕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호만스가 사회교환이론의 주요 토대로서 성공, 자극, 가치, 박탈, 즉, 공격-승인, 합리성과 같은 명제를 강조했다(배성의, 2002)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사회적 행동 동기는 더 자주 보상받을수록 그 행위를 더욱 더 쉽고(성공 명제), 현재의 자극이 과거의 것과 비슷할수록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높고(자극 명제), 행위의 결과가 개인에게 가치가 있을수록 더욱 그 행위를

하기 쉽고(가치 명제), 자주 보상을 받을수록 그 보상은 덜 소중하게 되고(박탈-만족 명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쉬울수록 그 결과는 더욱 소중하게 되고(공격-승인 명제), 개인은 결과의 가치와 그 결과를 얻은 확률을 곱한 것이 더 크다고 지각하는 행위를 선택한다(합리성 명제)(최재현, 1987:434-437)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교환은 본질적으로 '호혜성 규범(norm of reciprocity)' 혹은 '주고받기 원칙(the principle of give and take)'에 기초하며, 바로 이 규범을 사회교환의 윤리(the morality of social exchange)라고 할 수 있다(Ekeh, 1974:58). 그러므로 타인들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개인들은 역으로 어떤 형태로든 타인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즉 행동을 동기화하는 것은 보상에 대한 욕구이며,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처벌 혹은 비용을 피하려는 소망이다. 개인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타인과 상호작용 관계를 맺으며, 보상은 언제나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고 인정과 같은 상징적이며 비물질적인 경우도 있다. 사회교환이론에서 객체가 되는 자원의 종류로 사랑, 인정, 존경, 애정, 지위, 봉사, 물건, 정보, 금전 등을 들 수 있으며, 개인이 교환에 참여하는 것은 자익심리(自益心理)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임태섭, 2002).

한편 호만스와 블라우의 사회교환이론은 교환관계가 주로 대면적 상호교환에 한정한다는 점과 교환행위는 경제적 동기에 기초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은 교환을 통해 희소자원을 획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에 에케(Peter Ekeh)는 교환을 기초로 신뢰가 선행하고, 나아가 교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사회교환을 통해 시민의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이시재, 1999:187)고 강조하였다.

결국 사회교환이론은 개인의 상호 교환 행위가 철저한 보상과 사회적 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교환 내용은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정서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며, 이 교환 과정이 순환적으로 발전하여 시민의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교환이론은 지역사회자원 구축에 참여하는 개인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개인은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 자원을 가지고 지역사회자원 구축에 참여하며, 이들 개인의 참여가 확대되면 시민의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자원 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2. 자원봉사

대체로 개인은 지역사회자원 구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지역사회자원 참여하는 성원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권유에 의해 시작했더라도 흐르면서 그의 자발적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는 처음에는 권유에 의해 참여했을지라도 지속적인 참여는 참여자의 자발성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자원 구축에 참여하는 성원의 활동은 '스스로 들어 섬긴다'는 자원봉사(自願奉仕, voluntary)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자원 구축에 관한 이해를 위해 자원봉사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행과 범죄인의 재화에 초점을 둔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조사 연구의 결과로서 미국 사람의 80%가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재화에 중점을 둔다(Roberts, 1998:148)는 점, 활동 경험에 의해 얻은 사회적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입하는 경향이 강해졌다(Dean-Myrda Cullen, 1998:3)는 점, 공식 통계 자료로서 지역사회중심 처우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재범을 줄였다(Anderson, 2000:125)는 점 등으로부터 보호관찰과 같은 비행청소년 또는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지역사회자원이 대거 투입됨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에 산업화로 인해 범죄의 여지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족, 단체, 교회, 학교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 기관의 영향으로 오히려 범죄는 줄었고, 1980년대부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범죄는 다시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Dijk & Junger-Tas, 1988:263). 이와 같은 상황은 자원봉사가 범죄를 줄이는 데 강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사회 기관의 주된 분위기에 범죄문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 연대의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Choi, 1992). 결국 네덜란드에서 한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인의 재화에 대부분의 사회 기관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범죄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 즉 자원봉사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형사제도 관련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제도 현장에서와 달리 자원봉사 영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보다 압력 집단으로 활동하는 것에 더 치중했다(Gill & Mawby, 1990:5)고 한다. 이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공익 사업(프로그램)의 협력

자로서 뿐만 아니라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진수(2001:32-36)는 보호·교정 현장에서의 자원봉사의 의의를 세 가지 측면(국가·사회, 자원봉사자 활용 기관, 자원봉사자)으로 구분하여 강조하였다. 즉 자원봉사는 재범 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범죄인과 출소자를 위한 공·사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희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시민 각자에게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범죄인과 지역사회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한편 질과 모우비(Gill & Mowby, 1990:24-26)는 범죄 관련 자원봉사의 문제점으로 자원봉사자와 유급 직원 관계,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 관계, 지역간 차별, 신뢰성, 모금 관련 문제, 균형에 관한 의문을 지적하였다. 즉 이들은 범죄 관련 현장에서의 자원봉사는 유급 직원의 자리를 위협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낮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가 넘치는 곳과 절대 부족한 곳으로 나뉠 수 있으며, 능력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별 편차가 심하고, 갈수록 자원봉사단체는 모금에서 어려움을 겪고, 범죄 영역은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로부터 외면 당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비행과 범죄 관련 영역에서의 자원봉사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지역사회자원으로서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었고,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이 활동을 통해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특히 이 영역의 자원봉사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관련 제도를 감시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자원봉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는 지역사회자원 구축에서 참여하는 성원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의 이해 상황(利害狀況)을 치밀하게 따져 참여 성원을 유도하고, 이들 참여자가 사업의 협력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보호·교정기관

보호·교정기관은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과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인을 보호·교정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 산



하의 아동보호치료시설과 가퇴원자 또는 출소자를 위한 민간 교정 그룹홈을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공공 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무부, 호국과 교정국이 관장하고 있는 갱생보호공단,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구치소, 교도소를 대표적인 보호·교정기관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 보호·교정기관은 지역사회자원 활용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영하고 있다. 예컨대 갱생보호공단과 보호관찰소는 범죄예방위원을, 소년분류원과 소년원은 보호소년지도위원을, 구치소와 교도소는 교정위원을 기관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자들(한인섭, 1993; 박윤숙, 1997; 정진수, 2001)이 적한 바와 같이 보호·교정기관의 자원봉사자 조직과 운영 방법은 적지 않은 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선행연구는 자원봉사자 운영의 방안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자원봉사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포상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보호·교정기관의 몇몇 실무자와 활동중인 자원봉사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의 성실한 태도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보호·교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의 재발을 위해 협력하는 일에 전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 같은 입장은 현재 보호·교정기관이 지역사회자원을 선용하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 보호·교정기관 내에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자가 없어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관의 실무자를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6)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나라 보호·교정기관의 어려운 점은 대상자의 욕구나 문제를 위해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는 보호·교정기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데 역점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는 지역사회자원 구축에서 지역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참여 성원 개인의 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호·교정기관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가능한 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즉 각 기관의 역량에 알맞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 4. 지역사회자원

먼저 사전에서 자원(資源, resources)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유지·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각종 물자를 비롯하여 인간과 잠재적 가능성까지 포괄한다”(동서문화, 1999:13331)고 정의되고 있다. 이는 인적 자원과 산업 자원과 같은 모든 자원을 포괄하여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사회자원은 인적 자원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반 여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자원은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다. 예컨대 정신보건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자원봉사 등과 관련하고 있는 문헌들(Crimando, 1996; McCurley & Lynch, 1996; Wacker et al., 2002)에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이들 문헌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활용하는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교정기관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발에 주력하는바, 여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역사회자원은 개인, 현금, 물품, 시설(施設, facilities), 기관(機關, agencies)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앞의 사회교환이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형의 자원으로 사랑, 인정, 존경 등을 포함했지만 이들 무형의 자원은 결국 개인, 현금, 물품 등과 같은 유형의 자원을 매개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유형의 지역사회자원은 보호·교정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보호소년지도위원, 범죄예방위원, 교정위원 등의 활동, 부문별 자원봉사자협의회가 보호·교정기관의 행사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현금 또는 물품, 보호·교정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지역사회의 시설 활용, 보호·교정기관의 연계망에 각급 학교, 기업, 종교기관 등의 참여를 들 수 있다.

그러면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는 이렇게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까? 실무자는 어떤 형태의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든 개인과 접촉하는 일에 가장 우선 해야 함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사회자원의 동원은 유형과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그 자원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하고 있는 개인과 접촉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자원 구축에서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는 비록 지역사회자원의 유형이 다를지라도 개인을 접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5. 지역사회자원 구축

지역사회자원 구축은 기관의 실무자가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필요 (특히 인적 자원)을 지역사회로부터 끌어들이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발굴하고 교육시켜 활용하기 위한 지역사회자원 구축은 당연히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지역사회자원 구축은 공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가 지역사회자원 구축을 익히는 것은 비행청소년 범죄인의 보호와 교화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자원 구축은 왜 필요한가? 보호·교정기관에서 지역사회자원 구축을 위한 필요한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원 구축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할 때 부족한 자원을 지역사회로부터 끌어들이기 위해 담당 실무자는 적합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 자원을 적합한 곳에 투입함으로써 보호·교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자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원 구축은 필요하다.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는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여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 이들 자원을 더욱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자원 구축은 곧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렇게 극대화하는 것은 자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높여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보상하는 일도 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체계화를 위해 지역사회자원 구축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속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자원 구축을 전체 프로그램의 부속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공익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자원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 Ⅲ. 사례

앞에서 살펴본 주요 이론과 개념을 통해 지역사회자원 구축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와 지역사회자원 구축을 위해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들 이론과 개념을 근간으로 지역사회자원 구축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즉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자원 구축을 총괄하여 이해하고, 이들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다음에 소개하게 될 지역사회자원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과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교정협의회 운영',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 '좋은 멘터 되기' 사례는 보호·교정기관 또는 이와 관련하고 있는 현장에서 실시했던 것을 연구자가 수집하여 개요, 목적, 대상, 과정, 평가라는 틀에 따라 정리하였다.

### 1. 교정협의회 운영<sup>1)</sup>

#### 1) 개요

법무부 교정국 산하의 구치소와 교도소는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교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구치소와 교도소는 교정협의회를 전국 규모로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정기관의 대표적인 지역사회자원 구축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자원봉사체인 이 조직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치소와 교도소는 교정협의회를, 지방교정청은 교정연합회를, 교정국은 이 모두를 대표하는 교정위원중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정연합회와 교정위원중앙협의회는 교정협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여기에서는 교정협의회 운영을 사례로 선택하였다.

#### 2) 목적

교정협의회 운영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직접 관여하거나 교정기관의 사업을

1) 1994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교도소 또는 전주교도소의 교정위원과 지난 2년간 교정위원중앙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연구자의 경험과 교도소로부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교정협의회 운영을 지역사회자원 구축의 한 사례로 꾸몄다.



지원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교정협의회는 모든 참여 성원을 교육, 복지, 종교, 특수 네 분야로 구분하여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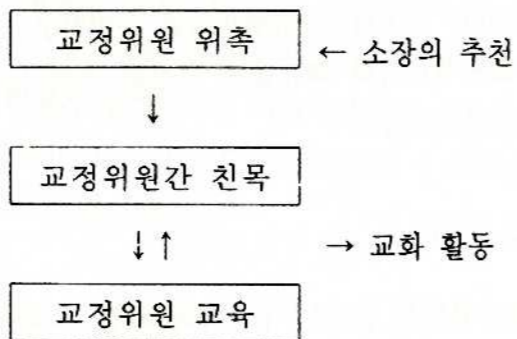
3) 대상

교정기관은 개별적으로 교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소간 차이가 있으나 약 50명의 교정위원(교화위원, 종교위원, 교육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교화위원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도급 인사들, 종교위원으로는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소속한 지도급 인사들, 교육위원으로는 수용자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에서 한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인사를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법무부, 2001:52).

4) 과정

교정협의회가 단순히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협의회 운영이 지역사회자원 구축의 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자원 구축로서 교정협의회 운영은 위촉, 친목, 교육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교정협의회 운영 과정



먼저 교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교정위원은 각 교정기관의 소장이 지방교정청장에게 추천하면 각 지방교정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교정국에 올려 법무부장관이 위촉

한다. 이 위촉은 교정위원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여 재위촉 또는 해촉함으로써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위촉된 교정위원은 운영지침에 따라 임원진을 갖춘 교정협의회에 소속하여 일정책의 회비와 격월 모임에 참석하여 위원간 친목을 도모한다.

교정협의회는 임원진은 소속 교정기관 측과 합의하여 교정위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죄인의 교정 관련 강의를 개최하거나 타 교정기관을 참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앞 단계의 친목 모임을 실시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5) 평가

앞으로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교정위원들이 이미 인품과 학식 그리고 경험을 갖추었다고 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교정협의회 운영이 지역사회자원 구축의 좋은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교정위원 각자가 경험한 사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인의 교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처럼 교정위원의 성실한 태도를 기대하기 위해 교정기관의 실무자는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고 활동 의지가 강한 개인을 발굴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2.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sup>2)</sup>

1) 개요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 사례는 범죄예방위원에게 보호관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 교육은 보호관찰 당국이 2000년부터 시범 보호관찰소를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현재는 전국의 보호관찰소가 형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2) 전주보호관찰소가 2000년에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을 처음 실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참여한 연구자의 경험과 2002년에 실시한 전주보호관찰소와 광주보호관찰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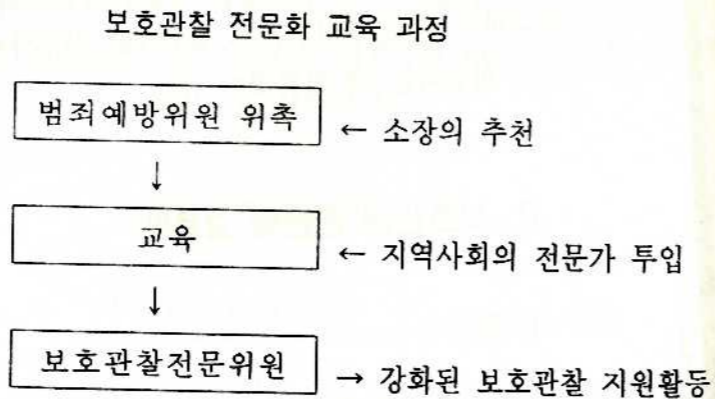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 과정을 통해 일반 범죄예방위원회에 전문적 지식과 현장의 경험을 겸비토록 하여 보호관찰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보호관찰전문범죄예방위원(보호관찰전문위원)으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대상

각 보호관찰소가는 범죄예방위원 중 보호관찰 활동에 의사가 있는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예컨대 2002년에 전주보호관찰소는 2차에 걸쳐 80명, 광주보호관찰소는 1차에 걸쳐 80명을 교육하였다.

4) 과정

지역사회자원 구축의 사례로서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은 범죄예방위원 위촉, 교육, 보호관찰전문위원화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에 참여할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앞의 교정위원 위촉에서와 같이 위촉 과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교육은 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위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정하며, 교육 강사는 자체 보호관찰 실무자를 포함하나 대부분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전문위원으로 격상하여 보다 강화된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즉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보호관찰전문위원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집행 감독 등을 위한 활동에 투입하고 있다.

예컨대 광주보호관찰소의 교육 과정은 5주간(주 1회, 1회 4시간) 총 20시간 과정으로 운영했으며, 강사진으로 판사, 검사, 상담분야 교수, 보호관찰관이 참여하여 대상자 지도와 관련한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대상자 유형별 지도기법, 상담심리치료, 대상자의 가족 개입 전략,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보호관찰제도론, 자원봉사의 의의 등이었다.

5) 평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을 따로 선정하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보호관찰 집행의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자원 구축 측면에서 본다면 이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은 각 범죄예방위원들에게 단 1회로 끝나 이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호관찰 당국은 범죄예방위원의 자질 향상과 이들에게 보상의 차원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실무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자를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

3. 좋은 멘터 되기3)

1) 개요

3) 1998년에 전주보호관찰소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협력하여 전주보호관찰소 내에 '해든누리상담실'을 설치하였고,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해든누리상담실'의 운영 요원들이 해마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에서 운영 요원들은 멘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좋은 멘터 되기'라는 부속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부속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자원 구축의 모범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소개한다. 연구자는 광주대학교에 재직하던 1999년에 광주대학교와 광주지방검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제1회 멘터 프로그램을 총괄 지도하였고, 전북대학교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해든누리상담실'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내의 해든누리상담실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제2기 사랑의 쉼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2002년 9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10주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전주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12명의 멘티(mentee)를 선정하였고, 해든누리상담실은 전북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12명의 멘터(mentor)와 중간관리자로서 대학원생 3명을 모집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멘터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9월 6일과 7일에 1박 2일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본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멘터와 중간관리자 그리고 총괄 진행을 위한 팀·부팀장이 정기 모임을 통해 멘터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개시 전에 실시한 멘터 모집과 워크숍 그리고 본 프로그램 중에 가진 중간 모임이 '좋은 멘터 되기'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목적

좋은 멘터 되기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투입되는 멘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는 멘터의 자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 모임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지친 멘터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개별활동 내용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얻고, 어려운 점을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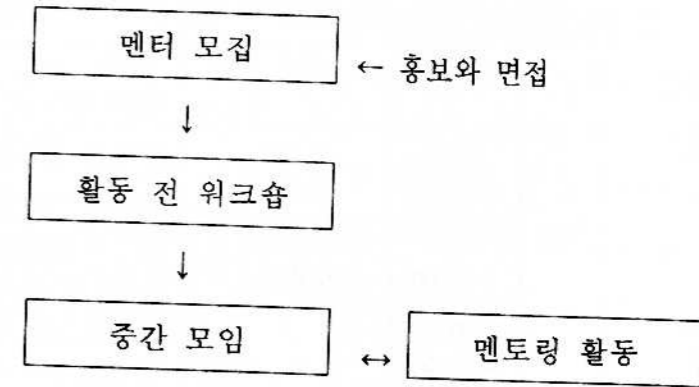
3) 대상

좋은 멘터 되기의 대상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2명의 멘터이다. 이 프로그램의 활동 전 워크숍에는 멘터를 포함하여 중간관리자, 운영 요원, 강사 등이 참여하고, 중간 모임에는 멘터와 중간관리자 그리고 운영 요원이 참여한다.

4) 과정

멘토링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멘터 되기를 지역사회자원 구축의 사례로서 멘터 모집, 활동 전 워크숍, 중간 모임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좋은 멘터 되기 과정



멘터 모집은 홍보물을 게시하고, 멘터로 지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운영 요원이 면접을 실시하여 엄중히 선발한다. 이때 멘터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가짐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면접에 합격한 멘터를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한 이해를 비롯하여 청소년의 발달, 보호관찰제도, 교정현장 등에 관한 이해를 위해 강의를 실시하였고, 멘터간 친교와 상담 기법을 익히는 데 주력하였다. 참고로 활동 전 워크숍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활동 전 워크숍 일정

일	시간	소 프 로 그 램	주요 내용	담당자
6일	17:00	집 결	조별로 모여 집결 인원 점검 후 장소로 출발	중간관리자
	18:00 ~19:30	집정리 저녁식사	조별로 집정리 조별로 저녁식사	중간관리자
	19:30 ~20:00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일정과 담당자 소개 성원들간 친목 도모	최미나 (중간관리자)
	20:00 ~20:30		멘토링프로그램 이해 멘터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이정미 팀장
	20:35 ~21:00		교정현장에 관한 이해	김학성 (전주교도소 의무사무관)
	21:05 ~22:05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이해	김용구 (전주보호관찰소 사무관)
	22:10 ~22:30		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이해	김영현 (중간관리자)
	22:30 ~23:00	레크리에이션	조별 성원의 단합을 위한 게임 전체 성원간 친밀감 형성 공동체 의식 강화	최근도 (중간관리자)
	23:00 ~23:50		상담과 의사소통기법, 역할놀이	박현진 부팀장
	23:50 ~24:00	조별 모임 평가	조별로 하루를 정리 평가 설문지 작성	중간관리자
00:30	정 리	하루 일과 정리	이정미 팀장	
7일	08:00 ~08:30	세면 및 아침 운동	구보로 아침 운동 세면	중간관리자
	08:30 ~10:00	아침 식사	조별로 진행	중간관리자
	10:00 ~11:00		멘터자질 향상 워크숍 마무리	이정미 팀장
	11:00	출 발	각 조별로 모여 집결 인원 점검 후 전주로 출발	중간관리자 이정미 팀장

자료 : 전주보호관찰소 해든누리상담실

중간 모임은 멘토링 활동 중에 이루어졌으며, 중간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조별 활동 내용을 보고한 후 각자의 활동 경험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컨대 1차 모임에서 토의한 주요 내용은 멘티의 흡연, 멘티가 멘터를 피하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개별 만남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걸도는 멘티, 의외로 맘을 열지 않는 멘티, 멘티의 친구들과 함께 만날 때 당황했던 것 등이었다. 중간 모임에서 멘터와 중간관리자들은 서로 주고받은 피드백을 통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

5) 평가

멘터 모집에서의 엄중한 면접, 활동 전 워크숍, 중간 모임으로 구성된 좋은 멘터 되기는 멘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멘토링 프로그램을 안정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하는 중간 모임은 멘터와 멘티의 일대일 개별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멘터를 지지하고, 함께 대처 방안과 정보를 나눔으로써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활동 전 워크숍과 중간 모임에서 멘터들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여유롭게 진행해야 하겠다.

IV. 지역사회자원 구축 과정

지역사회자원 구축 과정은 보호·교정기관의 사업(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실무자가 발굴·교육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일컫는다. 이 방안은 앞에서 정리한 관련 이론, 개념, 사례에서 강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살펴본 지역사회자원 구축 관련 이론과 개념 그리고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자원 구축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본 프로그램의 부속 프로그램으로서 일정한 단계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자원 구축은 최소한 필요 자원을 파악하는 단계, 필요 자원을 끌어들이는 단계, 끌어들이는 자원을 교육하는 단계, 훈련된 자원을 활용하는 단계, 활동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들 각 단계를 사정, 섭외, 훈련, 활용, 평가로 칭하고, 앞에서 다룬



이론과 개념 그리고 사례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단계의 목표와 과업 그리고 전략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지역사회자원 구축 과정

사항 단계	목표	과업	전략
사정	· 필요 자원 파악 · 자원 소개 파악	· 본 프로그램 이해 · 관련 정보수집 · 발굴 자원 결정	· 성실한 자원에 중점 · 가까운 곳의 자원에 중점
섭외	· 필요 자원 유도	· 홍보 · 설득	· 자발적 참여 · 제 3자 활용
훈련	· 역량 향상	· 교육 · 훈련	· 보상 · 연대의식 강화
활용	· 본 프로그램에 투입	· 지도 · 점검	· 본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평가	· 격려와 반성	· 자체 평가 · 참여 성원의 평가	· 실무자와 참여 성원의 공동 작업

### 1. 사정 단계

사정 단계의 목표는 본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파악하고, 이 필요한 자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둔다.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는 이들 목표를 위해 본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 중 부족한 자원을 파악한다. 지역사회로부터 동원해야 할 자원을 파악하고, 이들 자원의 발굴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수집한다. 즉 자원이 있는 곳,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실무자는 먼저 성실한 자원을 발굴하는 것과 가능하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을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을 세워 접근한다. 이는 자원의 동원이나 이후의 활용에서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깝게 있는 자원이 멀리 있는 자원보다 영향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을 대거 투입함에 따라 실무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

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 2. 섭외 단계

섭외 단계에서 실무자는 필요한 자원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것에 목표를 둔다.

실무자는 필요한 자원을 끌어드리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뿐만 아니라 실무자는 성실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실무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을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제 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3. 훈련 단계

훈련 단계의 목표는 참여 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참여 성원의 역량 향상은 교육과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실무자는 외부로부터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참여 성원을 훈련시킬 수 있다. 참여 성원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훈련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활용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훈련 단계에서 실무자는 참여 성원들에게 보상하고, 이들의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각 참여 성원은 나름대로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이들의 욕구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하고, 본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 4. 활용 단계

활용 단계의 목표는 훈련된 참여 성원을 본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자원 구축의 목적은 보호·교정기관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유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 단계는 장기간 진행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실무자는 참여 성원의 활동을 지도·점검함으로써 이 활동을 통해 이들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실무자는 참여 성원들이 본 프로그램의 진행이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적용해야 한다.

### 5. 평가 단계

평가 단계의 목표는 참여 성원을 격려하고, 부족한 것을 반성하는 데 둔다.

평가 작업은 실무자가 주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참여 성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방법과 틀은 실무자가 결정하여 사용한다.

이 단계에서 실무자는 평가에 자신과 같은 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적용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가 사회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발굴·교육하여 자원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보호·교정기관은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끌어들이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자원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보호·교정기관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교정기관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얻어낸 결과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통해 볼 때 비행청소년 또는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보호·교정기관은 지역사회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보호·교정기관의 실무자는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사회자원 구축이라는 또 다른 부속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과제는 이들 실무자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자원 구축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지역사회자원 구축

을 소극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위한 부속 프로그램으로서 병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보호·교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지역사회자원 구축에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관의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사회로부터 끌어온 자원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기관의 능력을 끌어올려 활용하는 것은 “교정기관은 효과를 최대화하고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 외부와의 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Wilkinson, 2000:149)의 원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제 보호·교정기관이든 사회복지기관이든 공익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기관의 실무자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참여 성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지역사회자원 구축에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합당한 자원을 동원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동원한 자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활용하는 것은 실무자의 당연한 책임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의 기량을 발전시켜 활용하면 더욱 효과·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한다면 이는 본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성원에게도 바람직한 보상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보호·교정기관에서 지역사회자원 구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무자의 사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본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사회자원 구축과 같은 부속 프로그램이 필수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에서 다룬 보호·교정기관에서의 지역사회자원 구축 방안은 시험적인 성격의 문제이다. 앞으로 실무자들의 시험적용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이 방안이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강영철, (2002), "비행소년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矯正研究』, 제15호.
- 김화수, (2002), "사회봉사명령", 『矯正』, 통권 제316호.
- 노호래, (2002), "경찰과 교정기관의 협력방안", 『矯正研究』, 제16호.
- 도서관운동연구회 옮김, (2002), *우라야스 도서관 이야기: 신임 도서관장의 도서관 만들기 경험담*, 도서출판 한울.
- 동서문화, (1999), PASCAL 세계대백과사전.
- 박윤숙, (1997),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개선 방안 연구: 보호관찰 분과위원 중심으로",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01),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 이문국·이인재 옮김, (2002), *지역복지 실천전략*, 나눔의집.
- 이성·정지웅, (2002), *지역사회조직론: 지역사회리더십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학지사.
- 이성식, (2002),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중심의 종합적 다기관 연계전략", 『矯正研究』, 제16호.
- 이시재, (1999), "사회적 교환과 일상적 상호작용", 김일철 외,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아르케.
- 정진수, (2001), *형사절차에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옥채, (2002a), "교정기관에서의 연계망 만들기과 활용에 관한 소고", 『矯正』, 통권 제311호.
- 최옥채, (2002b),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보호관찰 모형 개발*, 성남보호관찰소.
- 최재현 역, (1987), *현대사회학이론*, 형설출판사.
- 한인섭, (1993),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봉선, (2002), "출소자 복지증진과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矯正研究』, 제15호.
- 홍성열, (2002), "교정에 대한 실존주의 심리학적 접근", 『矯正』, 통권 제315호.

#### [외국문헌]

-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6). *Correctional Issues: Creative Therapies and Programs in Corrections*.
- Anderson, James L. (2000). "A Community-based, Integrated Approach to Corrections",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The State of Corrections*.
- Choi, Okchai. (1992). "A Sthdy of the Development of Penal Services in South Korea in the Light of Comparable Developments in Six Ohter Western and Asian Societies", Doctoral Thesis,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Crimando, William ed. (1996). *Utilizing Community Resources: An Overview of Human Services*, CRC Press.
- Dean-Myrda, Mark C., Cullen, Francis T. (1998). "The Panacea Pendulum: An Account of Community as a Response to Crime", Joan Petersilia ed., *Community Corrections: Probation, Parole, and Intermediate Sanction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Dijk, Jan J. M. van, Junger-Tas, Josine., (1988). "Trends in Crime Prevention in The Netherlands", Tim Hope, Margaret Shaw ed., *Communities and Crime Reduction*, London :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 Ekeh, P. (1974). *Social Exchange Theory: The Two Traditions*, Heinemann Educational.
- Gill, M. L., & Mawby, R. I. (1990). *Voluntee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ilton Keynes : Open University Press.
- McCurley, Steve, Lynch, Rick., (1996). *Volunteer Management: Mobilizing all the resources of the community*. Heritage Arts Publishing.
- Pincus, Allen, Minahan, Anne. (1978). *Social Work Practice: Model and Method*. Illinois : F.E. Peacock Publishers, Inc..
- Roberts, Julian V. (1998). "American Attitudes About Punishment: Myth and Reality", Joan Petersilia ed., *Community Corrections: Probation, Parole, and Intermediate Sanction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Wacker, Robbyn R. et al., (2002). *Community Resources for Older Adults*, Pine Forge Press.

Wilkinson, Reginald A. (2000). "Partnerships in Corrections",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The State of Corrections*.

[인터넷 자료]

배성익. (2002). <http://community.kongju.ac.kr/~sunny/19.htm>.

임태섭. (2002). <http://daisy.kwangwoon.ac.kr/~tslim/lecture/socialexchange.htm>.

## ABSTRACTS

### Community Resource Building for the Protective and Corrective Agencies

Choi, Okchai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cess of community resource building for the protective and corrective agencies. Because of lack of skills and funds at these agencies, it becomes known that various resources should be mobilized from the community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ose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mob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 is much required not only for the high quality of programs but also for the development of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social exchange theory and some concepts including voluntary are mentioned to rationalize the process of community resource building. Also three cases are introduced as the community resource building in the field of corrections. A model of community resource building for the protective and corrective agencies is developed based on the theory and those concepts.

Community resource building could be processed through the following levels; assessment, recruitment, training, application, and evaluation. Specially, community resource building should be emphasized to reward the participants for their efforts. Furthermore, community resource building is an important independent program from the main program which is to be conducted at the correctional centers. The model of community resource building developed in this study needs to be applied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추제어 : 지역사회자원, 지역사회자원 만들기, 자원봉사, 보호·교정기관, 연대의식, 보호관찰



教授 申 浚

< 목 차 >

- I. 序論
- II. 社會的 處遇의 實態
  - 1. 開放處遇制度
  - 2. 民間人的 矯正參與制度
  - 3. 外部通勤制
  - 4. 外部出張 職業訓練
  - 5. 歸休制度
  - 6. 社會見學과 合同接見
  - 7. 週末拘禁制度
  - 8. 夫婦 만남의 집
  - 9. 中間處遇의 집
  - 10. 다목적 센터
- III. 社會的 處遇의 擴大 方案
  - 1. 既存의 實施制度의 擴大
    - (1) 開放處遇의 擴大
    - (2) 外部通勤 및 外部出張 職業訓練의 擴大
    - (3) 歸休制度의 活性化
    - (4) 社會見學과 合同接見의 擴大
    - (5) 夫婦 만남의 집 運營 擴大
  - 2. 未實施制度의 導入
    - (1) 週末拘禁制度
    - (2) 中間處遇의 집
    - (3) 外部通學制度
- IV. 結論

I. 序論

社會가 複雜해지고 多元化됨에 따라 犯罪問題는 매우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 이후 급격한 經濟成長과 社會變動에 따라 價値觀의 混沌과 社會적 갈등 등으로 인하여 犯罪行爲도 그 수법과 규모면에서 大型化, 粗暴化, 集團化, 底年 齡化, 知能化, 多樣化, 國際化되고 있어 이에 대한 効果적인 대비책이 實히 要求되고 있다.

犯罪의 主原因이 貧困, 怨恨, 激情 등으로 단순했던 시대에는 犯罪對策도 단순한 처벌주의 였으나 科學文明의 發達에 따른 社會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犯罪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犯罪를 단지 한 인간의 道徳性의 결여에 의한 것으로 규정짓기에는 곤란한 많은 環境的 要因이 발견됨으로써 犯罪對策도 政治的·經濟的·文化的·社會環境的 要素들을 고려하여 그



에 상응한 刑事政策的 및 社會政策的인 대책의 수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矯正行政의 目的은 일시적인 過誤로 정상적인 社會생활에서 逸脫된 犯罪者들을 矯正施設에 수용하여 이들에게 건전한 國民思想과 勤勞情神을 涵養시켜 선량한 國民으로 다시 社會에 복귀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에는 反社會復歸思想이나 矯正悲觀主義(pessimism) 등의 영향을 받아 교정행정의 성과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矯正行政에 대한 일부 批判論이 대두되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施設內處遇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矯正施設의 開放化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즉 矯正施設의 환경을 가능한 한 일반사회와 비슷하게 하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시키려는 矯正의 社會化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先進諸國들은 위와 같은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犯罪者에 대한 處遇도 전통적인 矯正施設의 閉鎖性을 지양하고 社會化하려는 작업이 매우 활발하다. 犯罪者 處遇의 個別化·人道化·科學化·經濟化라는 관점에서도 處遇의 社會化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開放處遇를 비롯한 감시(supervision) 프로그램·주거(residential) 프로그램·석방(release) 프로그램 등 소위 「處遇의 多樣化 時代」를 맞이 하였다

그 중에서도 社會內處遇에 시설이용의 요소를 가미하여 施設內處遇와 社會內處遇의 中間에 위치하는 처우형태를 社會的處遇라고 부르고 있다.

社會的處遇에 관해서는 다음 두 가지 類型化가 가능하다.

첫째, 施設內處遇의 社會化라는 處遇思潮下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施設內處遇에 의한 보안의 요소를 축소하고, 施設內에서의 處遇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施設內에서의 생활을 一般社會와 가깝게 하는 것이 指向되고 있다. 그 예로는 ① 開放處遇, ② 歸休制, ③ 外部通勤, ④ 週末拘禁, ⑤ 休日拘禁, ⑥ 夜間拘禁, ⑦ 半拘禁, ⑧ 半自由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다시 시설과 구조 자체를 社會化하려는 개방시설 방법과 집행방법을 社會化시키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제2의 中間處遇의 유형은 社會內處遇의 多樣化라는 處遇思潮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社會內處遇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교도소와는 다른 폭넓은 자유를 갖고 중간시설을 이용해서 社會內處遇의 효과적인 적용이 지향되고 있다. 그 예로는 ① 프로베이션 홈(Probation Home), ② 프로베이션 호스텔(Probation Hostel), ③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 ④ 석방전 지도센터, ⑤ 社會內處遇센터를 들 수 있다

그의 중간처우시설의 운영유형으로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① 지역사회에 주거식 소규모 처우시설인 엠마우스의 집(emmaus house), ② 지역사회내 비주거식 소규모 처우시설인 옵션센터(option center)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矯正의 社會化를 지향하는 制度들로서는 어떠한 形態들이 있고 그에 따른 問題點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실시효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를 위해서 開放處遇, 民間人的 矯正參與制度, 外部通勤制度, 外部職業訓練, 歸休制度, 社會見學과 合同接見, 週末拘禁制度, 夫婦接見制度, 中間處遇의 집, 다목적센터를 중심으로 考察하여 보겠다.

## II. 社會的 處遇(中間處遇)의 現實態

### 1. 開放處遇制度

開放處遇(Open Treatment)란 閉鎖處遇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폐쇄교도소내에서의 刑罰執行으로부터 탈피를 시도하는 일련의 處遇內容을 말하며, 이는 전통적인 矯正所 내에서의 閉鎖的 處遇의 弊害를 제거하고 가능한 한 그 생활조건을 정상화하여 受刑者의 改善效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開放處遇의 概念은 이론적으로 그 의미와 내용이 確立된 것이 아니고 각국의 矯正制度의 발전에 따라 연혁적으로 정립된 歷史的·經驗的 산물이므로 그 意義와 內容은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概念은 絕對的 概念이 아니라 相對的 概念이기 때문에 그 意義를 한마디로 단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閉鎖處遇란 말이 종래의 전통적·인습적인 施設內處遇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開放處遇이기 때문이다.

開放處遇의 개념은 廣·狹義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廣義의 開放處遇는 開放施設에서의 처우뿐만 아니라 閉鎖施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外部通勤制, 歸休制, 夫婦接見制, 週末拘禁制 등과 같은 半自由處遇 또는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과 같은 中間處遇까지도 포함하여 결국 전통적인 閉鎖處遇로부터 조금이라도 탈피하려는 노력의 總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狹義의 開放處遇는 개방시설, 즉 형벌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閉鎖的 處遇의 폐해를 제거하여 그 生活條件을 일반 社會생활에 접근시킴으로써 受刑者의 再社會化 내지 개선효과를 얻고자 하는 처우방법을 開放處遇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開放施設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天安開放矯正所와 群山矯正所 등의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館을 들 수 있다.

天安開放矯正所는 開放處遇의 世界的인 趨勢에 발맞추어 1988년 11월 30일 신설, 개청하였으나 開放處遇 대상자의 선발 등의 어려움으로 1994년 3월부터는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所의 형태로 轉換되었다. 그리고 1994년 7월부터는 단기간의 假釋放豫定者만을 수용하여 처우하기 위해 미국의 Halfway House나 영국의 Hostel제도와 비슷한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館을 群山矯正所 부설로 설립하였다.



또한 女子 假釋放豫定者를 위하여는 淸州女子矯導所를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所로 指定·運營하고 있으며, '95년 12월에 馬山矯導所에 1개 지도관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남자 3개소, 여자 1개소에 假釋放豫定者를 전원 수용, 社會適應訓練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방시설의 문제점으로는 施設의 부족과 逃走事故에 대한 부담이 거론될 수 있겠다.

먼저, 가석방 예정자의 사회적응훈련에 있어서 총 550명에 불과하며, 教育期間을 3개월 이상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며 현재도 少年受刑者에 대한 假釋放前 訓練이 없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이다.

또한 假釋放 豫定者 이외에 장기간의 開放處遇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 신설이 시급하고, 開放處遇의 도주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蓋然性이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은 되었으나, 아직도 근무직원이 지도보호의 업무로서가 아니고 戒護의 業務로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 2. 民間人의 矯正參與制度

민간인의 矯正參與는 크게 無報酬의 自願奉仕制와 전문가의 시간제 활용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한 민간인 矯正參與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敎化委員 및 宗教委員과 같이 교정당국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BBS 등과 같이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矯正施設의 협력 아래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순수한 個人 자격으로 또는 宗教團體로서 참여하기도 한다.

현재는 주로 1983년부터 구체화된 敎化委員, 宗教委員制度가 가장 일반적인 민간인 參與方式인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敎化委員制度

敎化委員은 각 矯正施設이 소재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精神醫學者, 心理學者, 社會事業家, 教育者, 法曹人 등 學識과 經驗이 풍부하고 受刑者의 矯正·敎化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교도소장이 추천하고 法務部長官이 委囑하여 임명되며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敎化委員의 수는 <表2>에서 보듯이 1998년 말 현재 1,691명으로 전국의 43개 矯正施設에 평균 43명씩 위촉되어 있고 시설별 委囑基準은 수용정원에 따라 다르다. 敎化委員의 수는 1991년부터 증가하였으나 IMF 이후 참여 및 활동실적이 다소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敎化委員의 주된 活動은 受刑者에 대한 個別 및 集團相談, 敎化講演, 學科教育이나 레크레이션, 특별활동, 職業訓練指導, 姉妹結緣, 就業斡旋, 각종 敎化行事의 지원 등이며 다음 표에 의해 敎化위원의 활동실적을 분석해 보면 敎化위원 1인당 연평균 활동실적은 상담이 4.1명, 敎化강연이 0.5회, 자매결연 0.5명, 수용생활지원 0.8명, 취업알선 0.02명에 불과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敎化委員 수의 증가에 비해 활동실적은 미흡하다고 보겠다.

敎化善導와 再犯防止를 위하여는 종교귀의에 의한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므로 종래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篤志家와 宗教人의 敎化활동을 集約·體系化하고 교정의 사회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덕망있는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을 재소자 宗教委員으로 위촉하여 수용생활 중에는 물론이고 출소 후에도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종파별 교회의 주관, 교리지도, 종교, 카운셀링, 자매결연 주선 등을 담당하여 受刑者 信仰指導 및 心性純化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면 宗教委員 現況, 宗教委員의 宗派別 分布, 주요활동 실적 등을 다음 도표를 통해 분석해 보겠다.

먼저, 宗教委員의 數는 <表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도별 宗教委員의 수는 점차 감소하여 '98년말 현재 1,364명으로 1개 시설당 평균 30명 수준이다.

宗教委員의 종파별 분포는 <表5>에서와 같이 基督教 49.8%, 佛敎 31.4%, 天主教 18.4%, 기타 0.4%로 受刑者의 信仰別 分布와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일반신도가 372명으로 26.4%에 이르고 있다.

다음 종교위원의 主要活動으로는 宗派別 敎會, 集團 및 個別敎理指導, 宗教相談, 宗教行事, 수형자와의 자매결연, 출소자 신앙생활 권장 및 지도, 敎化도서 기증 등이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敎化위원의 활동보다는 전반적으로 활발한 편이나 최근에 다소 부진한 면을 보이는데, '97년도의 경우를 보면 종교위원 1인당 연평균 활동실적이 교리지도 51명, 신앙상담 19명, 자매결연 2명, 수용생활지원 12명, 敎化도서 기증이 14명 등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종교·敎化위원은 地方矯正廳別로 敎化聯合會를, 각 矯正施設에는 敎化협의회를 構成·運營하고 있으며 '95년 3월부터 宗教·敎會委員 중에서 1일 敎務課長制를 실시해 오고 있다.

### (3) 其他 民間人 矯正參與活動

이상과 같은 宗教委員이나 敎化委員 외에 社會著名人士의 活動으로 '97년도 실적은 敎化講演 196회 45,639명, 精神教育講演 1,451회 116,750명, 學科指導 231회 4,783명, 特別活動指導 496회 10,231명, 姉妹結緣 374회 1,118명, 收容生活 지원 825회 7,107명, 宗教敎會 671회 124,109명, 圖書寄贈이 163회 18,031권 등이다. 또한 외부전문가에 의한 시간제 채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수형자의 職業訓練, 學科教育, 書藝, 繪畫, 音樂 등의 지도를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敎化·종교위원 중에서 초빙되는 경우가 많다.

## 3. 外部通勤制(Work Release)

外部通勤制란 矯正施設에 收容된 受刑者에 대하여 無戒護하여 矯正施設 이외의 작업시설에서 사회 일반의 근로자와 같은 賃金生活의 勤勞條件 하에서 취업하게 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施設內에서 生活하게 하는 自由刑 執行의 한 方法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적용형태에 따라 司法型, 行政型, 그리고 混合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司法型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법원에서 외부통근을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며, 行政型은 釋放前 處遇의 일환으로서 假釋放 審査委



員會나 矯正機關에서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混合型은 양자를 혼용하는 경우다. 行政型은 수용으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을 해소하여 社會適應力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司法型의 경우에는 週末拘禁이나 夜間拘禁과 같은 半拘禁制度和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外部通勤制度는 이에 참여하는 受刑者가 대체로 保安上의 問題나 逃走나 事故의 危險性이 적기 때문에 보안수준이 낮고 經費가 적게 드는 시설에 수용될 수 있고, 자신의 收容經費를 부담할 수도 있어 經費面에서 效率的이다. 더불어 自我개념의 高趣, 技術習得, 수용상의 否定的 被害 縮小, 사회일반인과의 유대강화 등 教化改善效果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外部通勤의 受刑者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사회에로의 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출소후 취업기회도 용이하게 하며, 금전적으로도 家族을 지원하거나 피해변상도 해줄 수 있어 受刑者의 教化改善과 社會復歸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外部通勤制는 1880년 美國 메사추세츠州的 플라밍감 矯正施設에서 여자수형자에 대하여 연 말 봉사형식으로 社會에 내보낸 것을 嚆矢로 하여 오늘날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水原矯正所에서 3~4명의 수형자를 인근 法務研修院 職원이발소에 출역시킨 것을 嚆矢로 볼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天安開放矯正所가 開廳되면서부터이다. 비록 법적 근거는 없으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1년부터이며, '95년 개정된(제5차) 行刑法 第35조에 外部通勤制度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外部通勤對象者의 선발규정과 그 대상은 다음 두가지 형태가 있다. 그 하나는 "假釋放豫定者 處遇規則"에 의거 선발되어 제2단계 훈련인 근로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수형자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통근작업 운영규칙"에 의거 선정된 수형자이다.

운영실태를 보면 취업인원이 '98년 3월 2일 현재 전국 22개 矯正施設에 55개 일반 사업체에 1,024명이 취업하고 있는데 IMF사태 이후 다소 外部通勤作業이 위축되었으나, 99년도에 와서는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年度別 就業 年人員을 分析해 보면 1991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95년도에는 연 306,878명이 취업하여 外部通勤作業이 점차 活性化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作業賞與金은 作業賞與金 支給規定과 관계없이 사업체로부터 받는 임금액의 70%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지도보호직원의 지도 아래 자치 활동을 통한 자율적인 통제, 假釋放의 혜택, 높은 임금, 외부사업체 勤勞者와 함께 일한다는 자부심 등으로 인해 受刑者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도주사고와 작업 중 안전사고의 발생의 개연성이 있음은 물론 受刑者라는 신분때문에 작업 중 사고발생시 災害補償이나 醫療保險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업종목이 기술습득보다는 단순노무작업이라는 애로사항이 있다.

#### 4. 外部出張職業訓練

外部出張職業訓練이란 직업훈련시설과 장비 및 訓練敎師 등 제반훈련 여건이 우수한 사회

기업체에서 사회일반인과 같이 訓練手當을 지급받으며 직업훈련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水原矯正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첨단 산업사회를 맞아 受刑者가 出所後 사회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첨단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國家豫算上 그때 그때 사회에 부응하는 첨단기자재를 구입한 委託形式을 띠게 되었다. 그러므로 첨단시설을 갖춘 사회기업체 등에 내보내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技術力 向上을 기함은 물론 社會適應能力培養의 圓滑化를 도모하여 社會復歸를 촉진하고 再犯防止에도 效果的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 歸休制度(Furlough System)

歸休制度는 刑罰休暇 또는 休暇制度 등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구금 중의 수형자에 대하여 刑執行停止를 하지 않고 일정한 事由 및 조건하에 所長의 權限으로 기간 및 행선지를 정하여 外泊을 許可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22년 프로이센 사법성의 교도소 직무 및 집행규칙에서 처음 채택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부터 歸休施行規則과 歸休審査委員會規則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실태를 보면 歸休許可要件으로는 1년 이상 복역한 受刑者로 형기의 1/2을 경과하고 뇌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행장이 우수한 자로 누진계급 3급 이상인 자라야 하며 전 형기를 통하여 3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허가사유로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死亡하거나 위독한 때, 직계 존·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訓練·試驗·行事·就業斡旋·放送通信大學 出席授業 기타 교화상 목적이나 作業의 能率向上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으로 되어 있으며 歸休期間은 刑期에 산입하고 있다.

<表7>에서와 같이 1974년 이래 1998년까지 총 7,692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未歸休者는 단 1명에 불과하였으며, 연평균 308명을 실시하였고, 사고는 25년 동안에 단 1명에 불과하여 成功的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歸休制度는 受刑者의 가족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여 안정된 소내 생활과 개전의 정을 촉진하며 家族과의 紐帶關係를 재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출소 후 자립계획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犯罪者의 教化改善과 再犯防止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제도는 社會適應能力培養 등 受刑者의 사회복귀도모에 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逃走事故와 사회의 여건을 의식한 나머지 과감하게 확대실시하지 못하고 갈수록 縮小되고 있다는데 그 問題點이 있다고 보겠다.

#### 6. 社會見學과 合同接見

社會見學은 收容生活에서 오는 社會와의 단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사회의 실상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現場敎育의 일환으로 文化遺蹟地, 産業團地 등을 견



학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용자 合同接見은 우량수형자의 社會適應 能力培養과 長期受刑者 및 高齡者에게 가족과의 유대감 조성을 통하여 수용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矯正行政에 대한 가족 및 일반 사회인의 협조와 신뢰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矯正施設 내의 잔디밭 등 일정한 장소에서 가족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게 접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우량수형자에 한해 소수의 합동접견을 실시해 오다 '93년 5월부터는 거의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연간 2~4회 실시해 오고 있다.

### 7. 週末拘禁制度(Weekend in Prisonment)

週末拘禁은 새로운 형태의 刑分割執行方法으로서 家庭 및 職場生活에 지장이 없도록 토요일과 일요일을 통하여 刑을 執行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요일의 오후부터 수용되어 월요일 아침에 釋放되는 것을 말한다.

週末拘禁은 주말에 하는 刑의 分割執行이라는 점에서 시설수용을 하지 않는 家宅拘禁과 區別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말 이외의 휴가 등을 이용하여 刑을 分割執行하는 繼續拘禁과도 구별된다.

週末拘禁의 기원은 1943년의 독일의 少年裁判所法에 의하여 소년구금의 한 형태로서 休日拘禁을 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실시방법은 독일의 1956년 刑法草案에 의하면 비교적 경미한 交通違反者가 주요 대상자로 되어 있고, 벨기에에서는 週末拘禁이 적용되는 범죄로서 상품사기 및 식료품의 위조, 家族遺棄, 酒酩, 交通事故에 의 치사상, 알콜중독, 정비불량 자동차의 운전 등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週末拘禁制度는 경범수형자로 하여금 名譽感情을 自覺하게 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短期自由刑의 弊害를 除去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또 기존의 職場生活과 家族生活을 계속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損害賠償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問題가 되는 것은 執行의 場所이다. 주말구금에 있어서의 집행의 장소는 수형자의 주소 또는 직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에서 집행할 때에는 당연히 그 대상자의 범위가 한정되게 된다.

### 8. 夫부만남의 집(Conjugal Visiting System)

夫부만남의 집이란 일종의 夫부접견제도로서 부인이 있는 수형자의 경우 그 부인과의 완전한 夫부적 접견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접견기간 중 수형자는 矯正施設 밖 일정한 곳에서 수일 또는 상당시간을 자유로이 보내게 된다.

전자의 예는 스웨덴을 들 수 있는데 무입회 접견이 허가된 자는 그 상대방을 자기의 거처로 동행할 수 있고, 상호 의견이 맞으면 동침도 가능하다. 후자의 예로서는 남미제국의 살바도르,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法務部 例規 제514호 夫부만남의 집 運營指針에 의하여 1999년 6월부터 안양, 대구, 대전 및 광주교도소를 示範 運營機關으로 지정하여 夫부 만남의 집을 運營하고 있다.

運營回數는 각 시설당 매주 1건 이상으로 하고, 對象者는 형기 5년 이상의 受刑者 중에 家族과의 紐帶強化가 필요하고, 累進階級 2급 이상으로 형기의 1/2 이상을 服役했으며, 기능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합격등 他 受刑者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夫부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受刑者 家族은 直系 尊·卑屬과 配偶者로 하고 있다. 기간은 1박 2일의 범위 내에서 許可하고 교화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夫부만남의 집에는 침구, 세면도구등 필요한 물품은 교도소 측에서 비치하고 음식물, 취사 재료등은 허가를 받고 반입할 수 있으나 담배, 주류등의 반입은 금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矯正所內의 性問題, 즉 男子受刑者들의 성적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며, 교도소 내의 각종 불상사가 이성적 긴장감에 기인한다고 보는 견지에서 이 제도의 채택을 많은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로 성적 긴장감이 오히려 고조된다고 하여 일반 예방정책상 불리하다는 보고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많은 나라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9. 中間處遇의 집(Halfway House)

中間處遇의 집이란 원래 受刑者가 出所後 취업 등 社會適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게 하여 地域社會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도기적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과도기적 시설 기능 외에 직접적인 하나의 刑罰의 代案으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즉 施設收容과 지역사회 교정 모두의 대안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中間處遇의 집의 최초의 기원은 1817년 美國 메사추세츠 州政府가 求職難과 拘禁의 烙印으로 인한 出所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지금의 중간처우의 집과 비슷한 처우센터를 설립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美國에서는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美法務省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1994년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 전역에 약 400개의 Halfway House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1996년 전체조사에서는 약 800여개가 運營되고 있고 그 收容規模는 평균적으로 25명 정도이며, 이들 시설 중 대부분은 民營化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범죄인들의 과도기적 처우단계로서 존재하였던 中間處遇의 집이 오늘날에는 社會福祉的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으며, 단순히 출소자들을 위한 주거프로그램에 判事의 代案的 宣告로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 10. 多日的 센터(Community Diagnostic and Treatment)

美國의 矯正行政은 연방정부, 주, 군(county)단위로 다목적센터를 설치하여 法院의 결정을



도와주는 心理學的, 精神醫學的 診斷을 한다. 소년원에서 가퇴원한 사람을 보호한다든가 혹은 保護觀察官의 지도를 실시하고 센터내 생활 중에도 就業關係, 生活保護, 가족과의 유대 등 활발한 사회와의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法官, 保護觀察官, 保安官 등의 직무상 요구에 의하여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강력히 시행되고 있으며, 일명, "리셉션 센터"(Reception Center)라고 하여 少年法院을 위한 진단업무를 위해 2~5개월간의 단기처우, 가석방관찰의 행정사무소로서 재수용, 재훈련을 하고 있다.

이 센터는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등을 채용하기가 용이하고 정보 및 서비스 기관과 근접하여 수용자 가족과의 연락이 용이하며, 法院·保護觀察·假釋放機關과 가까워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캘리포니아 軍當局은 소년수형자들을 위하여 농장·캠프·소년원 등을 세웠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保護觀察을 條件으로 이 센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세크라멘토 범죄비행연구소가 결정한 靑少年矯正센터(Youth Correctional Center)의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센터는 非行多發地域에 설치한다.
- ② 定員은 시설당 16명 내외로 한다.
- ③ 收容期間은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센터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社會와의 相互援助를 활발히 한다.
- ④ 釋放者의 보호관찰용 사무소나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집단토의나 봉사를 하고 있다.

處遇는 제1단계 처우로 센터내 수용생활과 진단 및 처우를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을 3~5주간 실시한다. 제2단계로 사회에 출,퇴근하거나 통학시키고, 기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며 야간처우에 중점을 두어 약 3개월간 실시한다. 제3단계로 자기 집에서 생활하되, 처우상 필요할 때 센터에서 出場하는 것으로 약 20개월 실시한다.

### III. 社會的 處遇의 方案

이상과 같이 社會的處遇制度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 중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矯正效果와 問題點 등을 통하여 기존의 제도에 대한 擴大方案과 미실시제도의 향후 도입여부를 중심으로 矯正의 社會化 擴大方案을 알아보려고 한다.

#### 1. 既存의 實施制度의 擴大

##### (1) 開放處遇의 擴大

##### 1) 開放施設에 의한 處遇 擴大

우리나라에는 현재 일반수형자 중 開放處遇를 하기 위해 1988년에 天安開放矯正所가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것조차 開放處遇대상자의 선발 등의 어려움으로 1994년 3월부터는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館의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1994년 7월부터는 단기간의 假釋放豫定者만을 수용하기 위한 群山矯正所 부설로 설립되었다. 그 후 1995년 12월에 馬山矯正所에 1개 더 신설하여 현재 男子 3개소, 女子 1개소에 가석방 예정자를 수용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16개 시설에서 開放處遇를 실시하며 美國聯邦施設도 Camp 11개소, 男女共同收容施設 7개소, 靑少年收容施設 2개소, 교도소 부설 Camp 12개소, Correction Center 5개소가 있고, 英國은 134개 시설 중 13개의 開放矯正所를, 캐나다는 聯邦矯正所 69개 중 28개의 開放處遇施設이 있다. 싱가포르는 18개의 矯正施設 중 5개의 開放處遇施設을 운영하는 등 선진 각국이 開放處遇의 擴人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外國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와 수용규모가 비슷한 日本 등과 비교해서 순수한 의미의 一般開放矯正所는 하나도 없고 假釋放 豫定者 生活指導를 위한 4개(남3, 여1)시설, 그것도 부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교정의 社會化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天安開放矯正所는 일반 開放處遇를 위한 시설로 다시 환원하고 교도소 부설형태의 開放處遇施設 또한 점차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 2) 民間人의 矯正參與 活性化

민간인의 교정참여는 有給과 無給형태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 형편상 유급에 의한 part-time제와 같은 형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무급형태의 教化委員과 宗教委員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前述한 바와 같이 宗教委員과 教化委員의 숫자가 늘어 量的인 증가는 보였다. 그러나 質的인 면에서 보면 實業家의 비율이 53.3%나 되고 社會事業家, 教育者, 法曹人 등 專門家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30%에 불과하므로 精神醫學者, 心理學者 등 專門家의 確保와 宗教委員의 경우 非職者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質的인 발전으로 矯正效果를 極大化 하 여야 할 것이다.

둘째, 機能專門人力을 확보하여 矯正作業이나 職業訓練과도 연계하여 矯正社會事業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矯正廳別로 구성되어 있는 教化聯合會 중심으로, 아니면 本部(法務部)가 주관하여 法務研修院 등에 위탁 教化技法이나 矯正行政에 관한 연수를 받도록 하여 이들의 資質을 向上 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이들의 교정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矯正人賞 등의 포상기회를 확대하고 外國의 矯正施設 參觀時 職員과 같이 참여하도록 주선하며 言論媒體를 통한 수범사례 소개 등 社會 共感帶를 形成하는 등의 士氣진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外部通勤 및 外部出張職業訓練의 擴大

外部通勤의 경우 외부업체의 人力難, 특히 소위 말하는 3D업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형자들 중 거의가 外部에서 일한다는 자유스러움과 작업상여금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賃金의 保障으로 外部通勤作業을 選好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다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外部出張 및 職業訓練 역시 高度産業社會에서 필요한 專門技能人力을 養成하여 出所 후 사회복귀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건만 조성되면 보다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두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人員의 選拔과 해당 사업체의 소극적인 수용 자세, 도주사고와 작업 중 안전사고가 확대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바, 選拔條件의 緩和와 해당 사업체에 矯正의 重要性을 理解시킴은 물론 도주사고 책임문제의 재정립 등에 신경을 써 나가야 하겠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外部出張이나 外部通勤作業 중 逃走事故가 8건밖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취업연누계인원 1,166,464명에 비추어 보면 아주 미미한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소간의 도주사고를 감수하더라도 果敢하게 擴大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受刑者에게도 産災保險이나 醫療保險의 적용을 받도록 법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3) 歸休制度의 活性化

현재 세계적 추세는 矯正理念의 발달과 矯正의 社會化에 따른 외부와의 교통이 그 사회복귀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로 고조됨에 따라 歸休(休暇)·外出·外泊 등에 보다 비중을 두어 矯正處遇를 하고 있다. 獨逸은 21일까지의 정기휴가 등 네 가지 형태의 휴가를 두고 있다. 美國의 모범형법전은 受刑者의 친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장례를 위하여 단기간의 외출을 허용하고 가석방 전에는 2주간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한 번에 48시간 내지 72시간이 주어지는데 1988년과 1989년 사이의 정기휴가와 특별휴가의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총 休暇 件數는 43,138건이며, 그 중에 귀소하지 않은 비율이 7.2%이며, 귀소시간을 어겼거나 음주 후 귀소, 마약 반입 시도 등 법규를 위반한 비율이 0.82%에 그쳤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귀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도주 등 교정 사고 역시 미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볼 때 1962년 99명의 귀휴를 실시한 이래 1998년까지 총 12,197명을 실시하였고, 未歸所者는 5명으로 사고율 0.04%에 불과함을 볼 때 성공적으로 실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의 552명에 비해 1998년에는 330명으로 무려 40.2%의 감소율을 보인 것은 현대적 矯正理念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歸休許可要件의 緩和가 급선무라 하겠는데, 이럴 경우 단기간의 외출·외박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歸休로 인한 逃走 등의 矯正事故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積極적인 矯正을 꾀겠다는 신념으로 보다 歸休를 活性化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도주사고에 대한 책임관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본다.

### (4) 社會見學과 合同接見의 擴大

社會見學은 급변하는 고도산업사회의 실상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오랜 수용생활로 인한 사회변화를 깨닫게 하여 出所후에 社會適應의 어려움을 最小化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社

會見學은 矯正의 社會化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受刑者가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호하는 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주로 産業現場을 중심으로 見學을 실시하되 해당 산업체에 견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적극적 호응을 유도하여 社會見學의 擴大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合同接見은 주로 長期受刑者 및 高齡者에게 친인척이나 친지 등을 만나게 하여 상호 유대감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안정된 收容生活로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接見에 참여하는 여러 일반 사회인에게 矯正行政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되어 弘報效果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제도는 다같이 開放施設 뿐만 아니라 一般 矯正施設에서도 실시할 수 있어 여건이 허락하는 한 보다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5) 夫婦만남의 집

夫婦만남의 집 制度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矯正所 内の 性問題를 해결하여 이성적 긴장감에서 오는 교정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歸休나 外出, 外泊 등의 허가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여기에 해당되지 못할 경우 夫婦만남의 집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휴나 외출, 외박 등의 보완수단으로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보겠다.

## 2. 未實施制度의 導入

### (1) 週末拘禁制度

週末拘禁制度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輕犯受刑者로 하여금 명예감정을 자각하게 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惡風感染 등의 短期自由刑의 弊害를 除去할 수 있다. 또 기존의 職場生活와 가족과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事故 세계 제3위라는 不名譽답게 이와 관련된 受刑者 또한 相當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시장소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現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館처럼 각 矯正所에 併設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2) 中間處遇의 집(Halfway House)

中間處遇의 집의 역할이 종전에는 주로 矯正施設에서의 出所자가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도기적 시설로서 한정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역할까지 광범위하게 맡게 되었으며, 判事의 대안적 선고로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시설 수만도 1996년 현재 약 880개가 있으며, 대부분



민營化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식의 中間處遇의 집은 없으며 이와 유사한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館이 고작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犯罪者 處遇로서 뿐만이 아니라 교정복지적 차원에서라도 道廳所在地에 하나씩이라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民間人이나 宗教團體와 같은 民間團體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국가보조나 세제혜택 등 동기부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3) 外部通學制度(Study Release)

外部通學은 외부출장직업훈련이라고도 불리는데 外部通學하는 受刑者가 작업을 경험하는 대신에 教育的 體驗을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外部通勤作業과 똑같은 것이다.

다비드시크와 하이알렌의 1974년 외부통학 프로그램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41개 주를 비롯 해 연방교정국, 콜롬비아, 팜, 푸에르토리코가 외부통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거의 모두가 1965년 이후에 제반 여건이 충족되었다. 外部通學에 참가하는 인원의 1/2이 大學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高等學校이나 기본적인 성인교육에 참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外部通勤作業처럼 많은 주에서 중대한 性犯罪者, 強力犯罪者 등 대인적 犯罪者는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에도 참가를 금지시켰다. 도주사고는 외부통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100개의 시설중에서 경우 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專門化, 國際化 시대를 맞아 이를 도입, 컴퓨터나 어학 등을 專門教育機關에서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IV. 結論

지금까지 사회적처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國內外 諸般制度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具體的으로 考察하였다.

既存의 制度 擴大方案에 있어서는

첫째, 국내 유일의 開放專用矯導所인 天安開放矯導所는 순수한 의미의 開放處遇시설로 다시 選定하고, 각 지방청별로 지역사회, 경제여건에 맞는 開放施設 增設과 교도소 併設 형태의 開放處遇施設 또한 늘려 나가야 한다.

둘째, 外部通勤이나 外部出張職業訓練을 擴大하여야 한다. 고도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산업기술자의 양성과 出所後 생활기반조성에 가장 유용한 制度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취업수형자에게도 産災保險이나 醫療保險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歸休는 逃走事故와 같은 矯正事故도 적고, 그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外出·外泊 형태의 歸休도 병행실시해 나가야 하겠다.

넷째, 社會見學과 合同接見의 경우는 개방시설 뿐만 아니라 一般矯正施設에서도 별도의 시설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보다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99년 6월부터 안양, 대구, 대전, 광주교도소 등 4개 矯正施設에 수형자 '부부만남의 집'을 설치하여 한국형 부부접견제도(가족접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여 그 대상요건을 완화하여 확대·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未實施制度의 導入問題에 있어서

첫째, 週末拘禁制度는 우리나라의 경우 交通事故率 세계 제3위라는 불명예담게 이와 관련된 수형자 또한 상당수 있는바, 일시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交通事故등으로 형을 받았을 경우 직장을 잃지 않고, 家族生計를 돌볼 수 있고, 피해보상도 할 수 있도록 週末拘禁 형태의 刑을 分割執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矯正施設을 들 필요없이 현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館처럼 각 교도소에 併設運營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미국과 같이 시, 도 단위로 다목적센터를 설치하여 少年院에서 가퇴원한 자나 保護觀察 對象者, 假釋放된 者에 대하여 센터내에서 생활하도록 就業斡旋 및 生活保護 도모 및 가족과의 유대강화 등을 도와주어야 한다. 현재는 민간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셋째, 中間處遇所의 경우 美國에 있어서는 현재 무려 1,000여개의 시설이 있어 많은 효과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민간기업이나 종교단체 등이 적극 參與하도록 弘報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矯正의 社會化 방안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矯正行政의 窮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우리의 政治·社會·文化的 狀況과 價値觀 등 현실여건에 적합하고 未來指向的이며, 效率的인 制度를 적극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 矯正의 社會化는 矯正處遇 內容 및 方法의 社會化, 生活水準 및 生活條件의 社會化, 受刑者와 矯正施設, 社會化 接近手段의 社會化 등 사회친화적 다양한 방안이 모두 보장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矯正의 社會化를 이룩할 수 있는 최대의 추진력은 직접 처우를 담당하는 矯正職員이다. 교정처우의 計劃 立案, 實行, 所內 生活 일체에 대한 지도와 원조를 하는 것이 교정직원이고 이들의 資質, 指導能力, 思考와 行動, 矯正H의에 대한 이해 등이 교정의 사회화 진전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교정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유능한 인재의 획득, 세계 교정의 사조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형자를 폭넓게 수용하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충분한 지도, 원조능력과 열의를 겸비한 직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수형자가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행동하도록 囚人 社會의 特性, 즉 그들의 價値觀, 人生觀, 精神的 心理狀態, 生理 및 身體條件, 비공식 조직과 보이지 않는 문화체계, 꿈과 희망, 矯導所에 대한 인식과 矯導官에 대한 자세 등이 신뢰 속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올바른 교정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矯正當局은 矯正의 궁극적 목표를 기필코 달성한다는 강한 의지로 法과 秩序의 生活化는 물론 社會適應能力培養을 위한 다양한 처우방법을 開放·擴大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矯正의 기본질서가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社會와 유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언론매체와 접근은 물론 사회내 존재하고 있는 제반 人的·物的 資源을 矯正의 시설과 범위내로 끌어들이 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矯正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矯正當局만의 努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檢察, 警察, 法院, 更生保護 등 유관기관의 이해와 협조, 地域住民과 宗教團體, 社會團體 등의 폭넓은 矯正에 참여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法務行政의 양대축(檢察-矯正)으로서 矯正分野는 새로운 위치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搜查와 裁判分野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시간을 矯正施設에서 보내는 다수의 收容者들에게 矯正은 法執行의 최후의 堡壘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하며, 정부와 사회로부터 愛情과 批判를 정당하게 수용할 때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정한 犯罪人의 拘禁과 教化라는 目的을 함께 성취하기 위해서는 施設內 矯正과 社會內 矯正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矯正은 그 사회의 政治, 文化, 社會의 환경변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측면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눈높이 矯正行政과 살아있는 矯正行政을 위해서는 먼저 12,000여명의 矯正人들이 자성하고, 聖職者的 使命感을 갖고 임무에 임할 때에 이와같은 目標達成은 더욱 妥當겨질 것이다.

스웨덴의 교정정책과 행형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韓 貞 燮\*\*

1. 교정선진국으로서의 스웨덴

형사정책을 전공하는 학도에게 스웨덴은 무엇보다 「교정선진국」으로 불린다. 스웨덴의 복지주의는 실업자, 장애자, 이종, 노인은 물론 교도소에 재소자에게도 미친다. 스웨덴 교정을 이끄는 두 원칙은 ▲자유형은 자유박탈에 축하고 더이상의 고통을 파해치는 안된다는 것과 ▲교정환경은 가능한 외부사회와 유사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와의 접촉은 가능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 재소자들은 작업에 대한 임금을 받고, 동료재소자와 그들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으며, 쉬는 시간에는 카드게임도 즐긴다. 커피나 차를 자유로이 마시고, 담배도 사 먹을 수 있다.

교도관들은 재소자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사회내 전문가와 연결한다. 가족면회는 교도관의 감독없이 이루어진다. 전화도 대채로 허용된다. 정기적인 휴가가 인정되는 교도소도 많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모습은 보여지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복지국가의 이념에 충실하게 이러한 제도를 예외가 아니라 일상적인 운영원리로 삼았다는 것이 두드러진다.

교정시설의 낙후성과 재소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빈빈한 교정부조리, 반경역할 이룰 한다고 거조하는 교도관들의 현실을 눈상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 교정은 그야말로 만 세계의 이야기로 돌린다. 필자는 1997년 1월 20일부터 2주간 스웨덴 연구원(Swedish Institute)의 알선으로 스웨덴의 교정현실을 방문조사할 기회를 가졌다. 목표는 스웨덴의 형벌 및 행형 전반을 개관하면서, 구체적으로 교정시설의 실재를 살펴보고자 했다. 필자는 이미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의 형사정책 전반을 이론적으로 개관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기초연구에 의지하여<sup>1)</sup> 이번에는 교정정책

\* 이 글은 1998년 서울대 지역개발연구소 해외지역연구파제(학술진흥재단)로 수행한 연구인.  
 \*\* 서울대학교 法學大學 助教  
 1) 한인진, 「북구의 형사정책 연구」-형벌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 지역개발연구소, 지역연구, 제3권 제2호, 1994 여름호, 205-258쪽; 한인진, 「스웨덴의 교정처우와 민간장

에 대한 전반을 학자, 정책당국, 실무가와 직접 면접조사를 하여 살아있는 정책내용을 확인하면서, 교도소의 운영과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필자는 스웨덴 방문에 이어 핀란드 헬싱키의 대표적인 두 연구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핀란드의 입장과 스웨덴의 입장을 비교해보기 위한 문헌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도 본문에 반영될 것이다.  
 필자가 방문한 스웨덴의 교정시설은 2개의 개방교도소(Asptuna, Tillberga), 1개의 중경비폐쇄교도소(Kumla), 그리고 1개의 구치소(Huddinge)이다. 후당에 구치소와 아스프루나 교도소는 스페셜룸 외파에, 나머지 두개는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다. 이들 시설을 살펴보면서 교정선진국에서는 범죄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탐색해보았다.

현직조사는 그 현장의 실감과 살아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점에서 자료연구와 다르다. 처음에 교정시설 중심의 계획은, 스웨덴 연구소의 실무자와 논의하면서, 필자는 최근 스웨덴에서 형사정책상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접근을 아울러 요구하였다. 또한 사회내 처우의 중심을 이루는 보호관찰에 대한 현 장확인을 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문제를 아울러 확인코자 했다. 최근 스웨덴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과 운용을 둘러싼 현 장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점도 소개하고자 했다. 단지 복지국가로만 생각하던 스웨덴의 경우에도 범죄문제를 둘러싼 복지적 접근과 억압적 접근이 계속 대립하여 왔으며 이러한 논쟁은 전체 형사정책의 골간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도 도입적 설명을 하고자 했다. 이리하여 내용은 전체 형사정책의 기초, 최근의 주요한 형벌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교도소방문 기록을 세밀하게 기술하는 형태로 되었다. 다만 논의의 완성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으므로, 여기 서술하는 현상들은 1997년 2월 현재의 것이며, 논의자료는 추후 보충되어진 것도 있음을 밝 혀두고자 한다.

여, 「각국의 자립형사제도 연구」, 법무부, 1994, 165-214쪽. 그리고 필자의 글에 소개된 논문 이외에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Karen Leander, 「The Normalization of Swedish Prisons」, Vincenzo Ruggiero, Mick Ryan & Joe Sim, 「Western European Penal Systems, A Critical Anatomy」, London: Sage, 1995, pp.169-193; Bo Svensson, 「Criminal Justice Systems in Sweden」,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1995;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는 Hugo Tiberg et al., 「Swedish Law, a survey」, Stockholm: Juristförlaget, 1994 등.



II. 형사정책의 기초 및 형벌상의 동향

(1) 형사정책의 기초

스웨덴은 교정선진국, 인도주의적 형사정책으로 정평을 얻고 있다. 이는 다른 북구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공통된 현상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가장 관대한 편이며 스웨덴은 그 중간쯤 해당되고 핀란드가 약간 억압적인 형사정책을 갖고 있는 편이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구금자 수에서도 확인되고, 시설환경 및 형법정책의 기초에서도 드러난다.<sup>2)</sup>

정책기초는 상대적으로 보다 복지향적 접근(welfare-oriented approach)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억압적 접근(repressive approach)도 있을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복지에 주안점을 둔 관대한 접근방법이 우세했다.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형법범위가 감소하고 비범죄화의 추세가 지속되었다. 정치적 시위, 국기모독 등이 비범죄화되었다. 포르노그래피, 낙태 등도 비범죄화되었다. 형법에서는 모두 형벌의 종류 및 이용을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군교도소의 폐지, 형사는 물론 전시하에서의 사형도 폐지, 상습범을 대상으로 한 복수시설 수용 등이 폐지되었다. 평균형기도 단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러한 관대한 형법정책은 후퇴되었고 형사입법의 팽창 현상이 생겨났다. 물론 팽창현상이라 해서 무조건 억압적 정책으로 회귀한 것으로 단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팽창의 한 단면은 성폭력 관련규정이 뚜렷하게 된 점이다.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포르노그래피, 비디오섹스/폭력, 아내구타 등이 새로이 처벌되었다. 이같이 섹스/젠더 관련 범죄가 구체화되고 추가된 것은 여성운동의 성과의 반영일 것이다. 그리고 포르노그래피 등을 다시 제한하게 된 것은 보다 보수적-억압적 지향점으로 선회하는 측면과 여성운동의 성과가 일정하게 교차하는 부분이다. 요컨대 마약범죄, 경제범죄, 성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 및 구성요건의 확장 등이 변화의 핵심적 내용이다.<sup>3)</sup>

이러한 정책의 변화의 배경에는 정치적 역학의 변화가 개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는 사회민주당의 권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이다. 사회민주당은 범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귀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패배자(a loser)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접근은 연대감, 사회공학 및 사회

2) 이 기초는 스톡홀름 대학 범죄학연구소 소장 Henrik Tham 교수와의 대담(1997. 1. 21), 그리고 핀란드 헬싱키의 HEUNI 소장 Matti Joutsen과의 대담(1997. 2. 3.) 및 입수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3) Henrik Tham, "From Treatment to Just Deserts in a Changing Welfare State", A. Snare (ed.), *Beware of Punishment,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vol. 14, Oslo: Pax Forlag, 1995, p. 97.

적 치료(solidarity, social engineering and treatment)와 관련된 정책을 선호한다. 이를 범죄에 대한 복지적 관점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적 접근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통제의 그물망을 확대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형법 및 형벌의 남용 대신 치료와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형법 및 범죄규정의 감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sup>4)</sup> 특히 마약정책에서 복지적 지향은 억압적 지향과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또한 범죄원인을 빈곤, 사회해체 등으로 설정하게 되면 형법적 대책보다는 보다 일반적 사회정책의 틀 내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범죄자는 이웃시민이라는 동정적 관점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범죄자에 대한 비억압적, 국가적 간섭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면서, 범죄자를 환경의 피해자로 보는 관점이 도전받게 된다. 자유주의적 모델에서는 범죄자를 (시민의 권리와 자유, 재산 등을 침해하는) 약탈자 내지 기생충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범죄자는 절망적인, 이해할만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당화되기 어려운 개인적·이의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따라서 범죄자는 그가 저지른 잘못만큼 용돈의 대가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나 패배자처럼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선 안된다. 그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행위자이다. 여기서는 자유, 책임, 개인이라는 요소가 강조된다. 1980년대 이후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이전처럼 압도적으로 강한 정당은 아니며, 정권을 내주기도 했다. 때문에 부르조아-자유주의 정당들이 가장 잘 내세우는 대법적주의의 구호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80년대 이후 형사정책의 기초가 보다 억압적·보수적이며, 형벌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치적 배경을 이룬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법적으로 볼 때 스웨덴의 형사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볼 때 훨씬 복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1980년대 이후의 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의 악화가 교정처우의 악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정책적 방침은 뚜렷하다. 경제여건의 악화가 곧 교정처우의 악화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국가(가령 미국) 등과의 차별성은 뚜렷한 것이다. 아마도 스웨덴은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선진복지주의적 접근이 남아있는 것이다. 더욱이 1970년대에 정착된 복지국가적 교정모델에 기초한 교도소 환경 등은 거의 손상없이 남아있다. 북구에서 억압적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았다고 하는 핀란드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 행형정책의 면에서 스웨덴, 노르웨이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현저하다.<sup>5)</sup> 요컨대 복지국가적 형사정책 모델이 큰

4) Tham, 앞의 글, p. 114.  
5) 핀란드의 경우 지난 20년간 형법수준이 현저히 감소한 드문 예를 기록하고 있다. 70년대까지만 인구 10만명당 재소자 인구 120명을 기록했던 핀란드는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물에서는 유지되면서, 보다 자유주의적 공격을 수용하여 약간의 억압적 모델로의 후퇴가 보여지는 것이다.

(2) 형벌의 종류와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제도의 이용

1) 자유형과 그 대안 :

스웨덴에서 형사제재는 크게 자유형(14일에서 무기형까지), 벌금형, 조건부 자유형(conditional sentence), 그리고 보호관찰이 규정되어 있다. 그 중 자유형과 벌금형이 가장 일반적인 형이며, 조건부 자유형 및 보호관찰 등이 그에 대한 변형적인 형태인 셈이다. 조건부 자유형은 2년간의 조건부로 형을 유예하는 형을 말하며, 유예기간동안 새로운 범죄를 행했다면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보호관찰(probation)은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상담, 지도, 관찰함을 말한다. 1988년 이후 알콜 및 약물남용자에 대해서 법원은 자유형을 과하지 않는 대신 특별한 형태의 보호관찰을 당사자의 동의 하에 선고할 수 있다. 즉 범죄자에게 알콜 및 약물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고 그가 그 조건을 승낙하면 자유형을 면하는 대신 치료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며, 이를 계약처우제(contract treatment)라 부른다. 알콜남용자·약물남용자가 범죄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해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범죄에 해당하며, 달리 보면 알콜이나 약물남용으로 인한 중독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치료프로그램을 받기로 진지하게 약속한다면 형벌 대신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계약상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유예된 자유형을 복역해야 할 것이다.

1990년부터 청소년(18~25세)에 대한 사회봉사제(communitary service)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10월 이하의 자유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행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에서 40시간 내지 200시간동안 무보수로 공익작업을 과하는 것이다.<sup>6)</sup>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핀란드의 인구 10만명당 재소자수는 75명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에 반해 다른 북구에서는 원래 60여명 정도, 네덜란드는 40여명 정도였는데 형법정도가 약간 상승세를 보여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북구 제국이 대차없는 상태를 이루고 있다. 왜 핀란드에서만 이러한 자유형의 현저한 감소가 가능했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다. 그에 대해 핀란드의 국립법정책연구소(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Legal Policy)의 Seppälä 소장은 대담(1997.2.4)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용주운전에 대한 양형실체가 달라졌다. 용주운전자에게 반드시 심형을 선고하던 경향으로부터 조건부 자유형으로, 그리고 형기도 감경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용주운전에 대한 단속에서 사후통제 보다 예방적 통제(routine check)에 초점을 맞추어 용주운전자 자체가 줄어들게 만들었다. 둘째, 가석방(parole)이 매우 증가했다. 셋째,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Tapio Lappi-Seppälä, "Penal Policy and Sentencing Theory in Finland", *The Canadian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vol.V, No.1, January 1992 참조.

6) Ekbohm, Thomas (1995), "Crime and Correctional System Situation in Sweden", A

스웨덴에서 자유형에 대한 일차적 대안은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probation) 및 보호관찰부 가석방(parole)이다. 이는 스웨덴 교정보호국(Swedish Prison & Probation Service)에 의해 교정과 함께 통일적으로 관장된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해 판결전 조사보고서(presentence report)를 만들 책임을 진다. 이 보고서는 법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시설내 처우가 아닌 사회내 제재(communitary sanction)의 활용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장기간 수감된 자의 대부분은 가석방 후 1년동안 보호관찰 서비스(probation service)를 받게 된다.

보호관찰의 주요한 목표는 사회내 처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의 활용에 있다. 때문에 보호관찰 서비스는 전문가 공무원과 시민관찰관(lay supervisor)가 긴밀히 협조하는 체제를 갖추며, 보호관찰대상자는 이들 둘과 모두 관리를 갖는다. 보호관찰관은 고도로 훈련받고 일에 대한 수행의지를 갖도록 요청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전공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심리학 상담학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요청된다. 이들은 자신의 고개를 상담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며 격려한다. 보호관찰관의 주요한 일은 공판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보고서의 작성으로 재판관을 돕는 일, 보호관찰 실무에서 고개의 접촉인사(contact person)로서 지도원 호하는 일, 그리고 사회내 처우의 전반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직접 전문화된 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조직체제를 만들고자 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시민관찰관은 전문공무원과 함께 고개의 발전상황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은 보호관찰 서비스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이다. 한 고개의 접촉인사로 지명된 시민관찰관은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보호관찰 서비스의 눈과 귀가 되면서 고개의 모든 면에 걸쳐 상담, 지원활동을 통해 고개들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전문가와 보통시민들이 합쳐서 범죄예방 및 범죄자처우를 위한 시민협력, 시민참여의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스웨덴 제도의 장점이라 주장할 때 그것은 단순히 미사여구로만 들리지 않는다.<sup>7)</sup>

자유형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은 사회봉사명령(communitary service) 및 계약처우제(contract treatment)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시간 지역사회 내에서 무분노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며, 주로 18세 내지 2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사회봉사명령이 아니었다면 단기자유형을 복역할 자에게 적용된다. 이

lecture in Tokyo.  
7) *Prison and Probation Services in Sweden*, "Probation work in Sweden", June 1996. 위의 Ekbohm의 자료를 보면 1992년 현재 5,000명의 시민관찰관이 월 26불 만큼의 대가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특별한 종류의 보호관찰인 셈이다.

한편 또다른 특별한 보호관찰 형태로서 계약처우제가 1988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이는 마약 및 알콜 중독자로 범죄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전제로 자유형 대신 사회내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 제재의 확정에 앞서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동의를 준수하는지는 엄격하게 감독한다. 이 제재는 2년 이내의 자유형에 대한 대안으로 구상된 것이다.<sup>8)</sup>

2) 전자감시제도의 실험과 제도화

최근 스웨덴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제재는 전자감시를 통한 집중감독제도(intensive supervision with electronic monitoring)의 실험이다. 이 제도는 8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sup>9)</sup>, 89년 경부터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중이다.<sup>10)</sup>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다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1994년 실험적으로 일부에서 도입되었고, 계속 확대 실시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스웨덴의 제도는 3월 이하의 단기자유형에 대한 선택적 대안으로 도입되었던 점이 이들 나라와 다른 특색을 보여준다. 필자가 대담한 학자와 실무자들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있을 만큼, 이 제도의 성과와 성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때문에 필자는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제도화 과정,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자감시제도가 실시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스웨덴 범죄방지연구원(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을 방문하여 그 개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sup>11)</sup>

스웨덴에서 전자감시제도는 3개월 이하의 자유형을 살기로 선고받은 자 중에서 자유형 대신 전자감시를 받기로 동의한 자 중에서 선정된다. 그는 주간에는 그의 생업을 위해 직장에서 근무하고 직장 일을 마치고 시장을 보는 등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정취가시간부터 지정출근시간까지는 자신의 집을 떠나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야간에는 스스로를 가택연금시키는 셈이다. 가정에 머무름 때도 교도소와 같은

8) 한인섭, 복구의 형사정책연구 - 형벌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 30쪽, 1993의 경우 계약처우제는 658명이 선고받았으며, 그 중 11%가 여성이었다.  
9) 미국의 전자감시에 대한 한국 문헌으로는 김갑성, "미국의 전자감시 시스템과 가택구금의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3호, 1993, 85-112쪽; 김용준, "미국의 출소자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호, 275-292쪽 참조.  
10) 법무부 보호국 EMP연구반, "사회내 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보호, 법무부, 1999/6, 101-164쪽 참조.  
11) 1997.1.23. 필자는 이 연구원을 방문하여 주로 안 앤더슨 연구원(Jan Anderson)과 만나서 토의하였다.

조건 하에서 머물게 되므로 알콜 및 마약 등은 금지된다.

전자감시제도는 3개월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는 집중감독 및 감독내용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범죄자와 한 가정에서 동거하는 자의 동의도 필수적이다. 신청이 있을 경우 실시여부는 지역의 보호관찰 사무소에서 결정한다.<sup>12)</sup> 소요비용은 사전에 지불해야 하고 영수증을 보호관찰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감시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전제로서 전기 및 전화가 가동되는 적당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범죄자는 주야간 모두 가택연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간에도 노동, 공부 기타 전념할 작업이 있어야 한다. 노동 이외의 직종에 있더라도 적어도 반일제 근무 이상의 작업에 종사해야 한다. 범죄자는 보호관찰 서비스에서 결정된 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알콜, 약물 기타 모든 마약 종류는 금지된다. 범죄자는 집중감시기간동안 하루 50크라운(6천원 정도)을 지불해야 한다.

소요장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쪽 발목에 채우는 전자속쇄이며 이를 transmitter라 부른다. 이는 언제 어느 경우든 발에서 뚫 수 없다. 제품은 이스라엘 제로 성능은 여러 차례 실험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함이 입증되었다고 했다. 필자의 느낌으로 속쇄의 크기는 어느 정도 감추어질 만하나, 조금 기술이 향상되면 훨씬 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둘째, 전화기 및 전기선에 연결된 감응기로 이를 receiver라 부른다. 속쇄로부터 감응기로 분당 몇차례의 신호가 보내진다. 그 신호는 기록되어 호스트 컴퓨터로 전달된다. 감응기와 속쇄가 근거리에서 있을 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15미터 이상 떨어지면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즉각 감응기와 연결된 컴퓨터에 신호를 보낸다. 그 컴퓨터는 Norkoeping 시에 있는 중앙 통제실에서 관리되며, 다시 컴퓨터 단말기로 거주지역의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달되며, 담당 관할관은 대상자에게 확인전화를 하게 된다. 그가 그러한 제한조건을 위반하면 수감되어 원래의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이 전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비용은 상당하지만, 일상비용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제조사의 경우 1인당 하루 1,000크로나 정도 드나, 전자감시제도를 이용할 경우 450크로나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그 비용의 대부분은 대상자 자신이 부담하므로 형집행에 대한 국가부담은 크게 절감되는 셈이다.

집중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하다. 통상적인 경우 적어도 주 2회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며, 그들 중 일부는 야간 및 주말에 이루어진다. 전화를 통한

12) Lis Somander, A Year of Intensive Supervision with Electronic Monitoring, results for the period August 1994-July 1995, The National Prison and Probation Administration, p. 4.

접촉을 유지할 수도 있다.<sup>13)</sup> 마약, 알콜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혈액·소변·breathalyser 샘플을 채취해 보내기도 한다.<sup>14)</sup>

그러면 실제 이용도는 어떤가. 1994년부터 기술적 여건의 제약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범실시가 이루어지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4. 8-1995. 7 : (3개월 이하의) 단기자유형 대상자수 637명 중 432명(69%)가 신청, 이 중 396명에 대해 허가가 내려짐. 실시자 중 93%가 성공적으로 완수, 6%는 조건 위반으로 취소. 위반사유는 알콜 혹은 마약의 이용, 정해진 시간에 집 혹은 직장에 있지 않음.

1995. 8.-1996. 2. : 단기자유형 대상자 수는 451명으로 읍주운전이 과반수, 나머지는 폭력 및 절도 등. 이 중 341명(77%)가 신청, 이 중 309명(89%)에게 허가가 내려짐. 실시자 중 91%가 성공적으로 완수, 6%는 조건 위반으로 취소. 대체적인 수치는 시행 첫째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짐.<sup>15)</sup>

이러한 수치로 볼 때 다수의 단기수형자들이 전자감시제도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성공적임이 입증되었다고 자평할 수 있을 법하다. 전자감시제도의 옹호자들은 수감시설에서 파양구금 현상을 경감시킬 수 있고, 범죄자의 사회내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며, 범죄자와 가족·사회와의 결함을 유지시킬 수 있

13)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관찰의 한 특수한 형태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원호, 감독을 받는다.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전자감시제도를 실행하는 현장에 동행할 수 있었다.  
97. 1. 28. 오전에는 보호관찰 센터에 가서 캐실리아 앤더슨(Cecilia Anderson)으로부터 전자감시에 대한 실무 강의를 들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대상자(client)가 있으니 한번 보자고 해서 동행했다. 그녀의 오늘의 대상자는 보호관찰관 사무실로 방문한 키코고 잘 생긴 청년이었다. 그는 약간 어리둥절하고 불안스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보호관찰관이 내주는 서류에 싸인을 하고, 은행에 돈낸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 돈은 전자감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비로 부담한 것이었다. 조건에 따라 해야 할 소변검사에 동의했으므로(이 소변검사는 마약 및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그는 주 1회 사무실에 와야 하고, 사무실에서 2-3시간 정도의 강의 및 면담을 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귀가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늦었을 때는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는 2인의 보호관찰관이 동행하며, 저녁에 예고없이 몇차례 방문하기도 한다고 했다. 직장은 그의 상사 중에서 시민감독관이 선정되며 그는 보호관찰관에게 소정의 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이 실시된다. 그 시민감독관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사무실에서 전자속쇄를 채우고 감응기를 들고 그 청년의 집으로 갔다. 집에 가서 전화와 연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설치 후 집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신호음이 잘 연결되는 지 확인했다. 대상자는 약간 긴장된 얼굴로 보호관찰관이 하는 일을 쳐다보면서 보호관찰관이 하는 지적을 주의깊게 듣고 있었다.  
14) 앞의 글, 5쪽.  
15) Lis Somander, The Second Year of Intensive Supervision with Electronic Monitoring, results for the period 1 August 1995-29 February 1996, Swedish Prison and Probation Administration 참조.

는 잇점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형사제재의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갖고 있으며, 보호관찰 중 지도·원호 기능보다 감시·감독기능에 더 치중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거기다 빈곤자는 혜택을 보기 어렵고,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비판한다.<sup>16)</sup>

그러나 스웨덴의 예는 보다 성공적이다. 적어도 직업활동을 유지하게 하고 수입 상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경제적 잇점, 가족과의 유대의 유지 및 자녀와의 직접적 접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잇점, 시설내 구금보다 인도적이라는 잇점, 비용 면에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다는 점은 쉽사리 인정될 수 있다. 시행의 실효를 평가해 보면 재범율을 시설내 구금의 경우보다 감소시켰다는 점도 인정된다. 또 하나의 부수적 효과는 단기수형자들이 주로 알콜/마약습관이 있는 자의 비율이 적지 않기에 범죄행동 뿐 아니라 마약/알콜 습관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성과를 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sup>17)</sup>

실제로 전자감시 제도는 범죄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유형에 비하면 너무 경미한 고통만 초래하지 않을까. 앞의 앤더슨 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도에 대한 수형자의 태도조사의 결과 매우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매우 힘들고 거칠고 고통스럽다(hard, tough, painful)하다는 것이다. 자유사회에 살면서 부자유를 실감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가운데 자기억제의 훈련을 쌓고 범죄의 대가를 충분히 실감하고, 또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치르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잇점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한가지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전체 수형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종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새로운 사회내 처우들이 자유형과 같은 시설내 처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효과를 냄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영향력을 더 넓히고 형사적 통제 대상자들을 더 확대하는 효과를 자아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형사적 그물망의 확대효과(net-widening effect)라 한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에, 영국은 1989년 정도에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보호관찰의 한 유형으로 채택했기에 그물망 확대효과를 피할 수 없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웨덴의 경우 이 비판을 감안하여, 전자감시제도는 자유형이 확정된 자들 가운데, 그 집행방법의 하나로 이 제도를 채택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물망 확대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경우 비판을 감안한 대안을 세운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적인 그물망 확대효과마저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

16) 藤下忠, 刑事政策の學說, 東京:成文堂, 115-117쪽 참조.  
17) Lis Somander, 앞의 글(1996), 19-20쪽.



는 생각이다. 교도소에 들어올만한 범죄자군은 어느 사회나 넘쳐나기 마련이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교도소의 과잉화 가능성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런데 전자감시제도는 교도소의 일부기능을 대행하게 되므로, 그렇게 빠져나가는 수감

범의 신규인원을 입소시킬 여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관련되는 또하나의 비판은 개인에게 전자감독을 채우는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Big Brother의 사회가 현실화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이다. 문제의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 즉각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기술적 가능성은 이제 활짝 열려 있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전자관리·감시 시스템을 손쉽게 용인하면 나중에는 모든 개개인에게 바코드를 붙이고, 일거수 일투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이다. 단지 전자감시제도 자체는 자유형의 대안이므로 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확고히 제도화하게 되면 더 나아가 사회통제에의 문호를 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다만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이 제도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단기자유형(가령 6월 이하의)이 확정된 자 가운데, 이 제도의 실행 여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적용에 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집행에 대한 차별적 대우(혹은 재량권 남용)의 비판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감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되,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자칫하면 재산수준에 따른 형벌의 차별이 생겨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 행형에 대한 감시의 문제 : 음부즈멘 제도, 유럽위원회의 관여

행형영역을 특별권력관계로 취급하거나 사법적·시민적 통제가 불가능한 특수영역으로 취급하던 것은 낡은 권위주의와 독재주의의 산물이다. 오늘날은 행형영역에도 어떻게 사법통제 및 시민감시를 제도화할 것인가에 각국의 관심이 쏠려 있음은

18) 1997. 2. 4. 핀란드 헬싱키에서 대담한 국립법정책연구소(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Legal Policy) 소장 Seppälä는 그같은 관점에서 전자감시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구에서는 스웨덴만 이 제도를 도입했고 다른 나라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같은 전자감시제도는 대단히 큰 정서적 역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 전체에 감시와 통제망이 널리 퍼져감을 의미한다고 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감옥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면 지지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안이 얼마나 대안으로만 남아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감옥에 대한 대체안으로 나왔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확대효과를 일으킨 경험, 처음에 대체책으로 나왔던 인물이 보완책으로 변질되었고, 비교적 경미한 제재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 자리잡게 되어온 경험도 반추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은 국가가 전자정보를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높은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지지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과연 어느 국가가 그러한 도덕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가 문제라는 취지였다.

두달할 나위가 없다.

스웨덴에서 행형에 대한 외부적 감시기관의 하나로 스웨덴의 음부즈멘 제도(The Parliamentary Ombudsman)가 있다.<sup>19)</sup> 음부즈멘은 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현재 4인의 음부즈멘이 있으며, 전직 법관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스웨덴 의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선출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는 생길 수 없다.

음부즈멘은 일반시민으로부터 진정(complaint)을 받거나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할 경우 일반행정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권고를 할 수 있다. 그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과 당국에서 존중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음부즈멘이 창립된 1809년부터 약 1세기간은 음부즈멘은 스스로 사안을 인지하고 수행자의 리스트를 조사하고 또 필요한 조사를 하였다. 즉 처음에는 일종의 특별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인지하면 음부즈멘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접 공소를 제기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19세기에는 수많은 기소가 음부즈멘에 의해 행해졌지만, 점차 직접 기소하는 역할은 감퇴하고 대신 경고(admonition)를 주는 것을 주로 하게 되었다. 물론 그러한 경고도 언론에 공표되고 연례보고서에 인쇄되어 의회에 보고되므로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어떤 강제권이 없음으로 인해 '이탈없는 호랑이'라는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음부즈멘의 활동은 직접 인지조사보다는 오히려 민원인의 진정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 담당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음부즈멘의 수도 1명에서 4명까지 늘어났다. 지금은 음부즈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진정의 처리임은 이외의 여지가 없다. 민주사회에는 모든 시민들은 당국의 조치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관념이 음부즈멘의 정당화 근거가 되는 셈이다. 또한 모든 공무원들은 그의 공무수행이 음부즈멘에 의해 감사받을 수 있으며, 그가 적절한 공무수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시민과 음부즈멘에 의해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sup>20)</sup>

스웨덴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음부즈멘에 진정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건연관성도 요구되지 않는다. 진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수료는 없다. 다만 익명의 진정은 접수하지 않는다. 진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법부, 경찰, 교도소 및 구치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형사사법관련 사항이

19) 1997. 1. 22. 필자는 의회 음부즈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아래 음부즈멘 제도에 대한 논의는 음부즈멘 1인, 사무국장 등과 대담한 것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20) Bengt Wieslander, *The Parliamentary Ombudsman in Sweden, Sweden: The Bank of Sweden Tercentenary Foundation, 1994, p. 50.*

전체 진정의 절반 가량 된다.<sup>21)</sup> 다만 교정비리라 해도 그 내용이 경미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크게 신뢰할 수 없거나 오해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사없이 기각', '조사후 비판의견 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경고', 기타 '비판'이 다음을 차지한다.<sup>22)</sup> 경우에 따라 형사기소를 하거나 징계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음부즈멘은 갖고 있으나, 최근 그러한 예는 거의 없다.

재소자들은 서신 발송권이 제한되지만, 이러한 제한은 음부즈멘에 보내는 서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정인이 요청할 경우 음부즈멘 비서실에서는 진정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발송해야 한다.

III. 스웨덴 교도소의 실태조사

스웨덴의 형벌 및 행형에 대한 대체적 지식을 얻고 난 뒤, 교도소에 대한 현지차량 관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식적 측면에서의 정리는 예비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반적 소개보다는 현지방문조사의 특성에 맞추어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느낌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했다. 전체의 개요보다는 방문한 기관에 대한 섬세한 묘사에 주안점을 둔 보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다만 스웨덴의 교정시설을 단계별로 살펴본 것이므로, 필자가 방문한 개별 기관들에 대한 소개를 종합하면 스웨덴 교정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sup>24)</sup>을 그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 공장형의 릴베르야 개방교도소

스톡홀름에서 기차를 타고 펼쳐지는 진나무숲과 호수의 풍경에 넋을 놓다보면 베스트로스 시에 도착한다. 다시 20여분을 택시로 가니 유명한 릴베르야 개방교도소

21) Wieslander, 앞의 책, 53쪽.

22) 교정분야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진정은 신체검사의 비인도성에 대한 것이라고 음부즈멘과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마약의 교도소반입과 관련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대해 인권침해라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것이다.

23) 실태조사의 개요는 신동아, 1997년 4월호, 434~451면에 '선진 교정 현장 스웨덴 방문기, "그런데 교도소는 어디 있습니까?"에 일부 상세되었다. 거기에는 정확한 각주와 상세한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아울러 보완한다. 교도소에 대한 실태조사의 성격상 논리적 내용과 함께 필자의 느낌이 여기저기 녹여있다.

24) 스웨덴의 교정 실태에 대한 객관적 정리 및 개선권고안에 대해서는 가령 Report to the Swedish Government on the Visit to Sweden, carried out by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rom 5 to 14 May 1991, Council of Europe 및 Response of the Swedish Government to the Report of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n its Visit to Sweden, 1992/10, Council of Europe 참조.

(Tillberga open prison)가 나타난다.<sup>25)</sup>

여기 소장(Bengt Ludvigsson)은 뜻밖에도 여성이다. 소장은 1961년부터 교도소에서 근무했고, 1973년 릴베르야 교도소가 신축될 때부터 여기서 일해왔다고 한다. 약간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가냘픈 인상에도 다리도 불편한 여성이었는데, 그것을 보니 스웨덴 답다는 느낌. 우리라면 신체적·성적 조건을 따져 소장은 커녕 교도관 임용도 되기 어렵지 않았을까.

때문에 첫 대화는 이 교도소에 있는 여성직원의 수와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여성직원은 대략 1/3 가량 되며, 오직 재소자 수송부서만 남자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소장 자신이 처음 근무할 때는 남자 상사와 동료로부터 불편과 불신의 눈초리가 없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늘었고, 여성의 역할도 증대했다고 한다. 더욱이 재소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교도소가 남성문화적 요소를 갖는데서 생기는 문제점을 여성직원이 증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쌓이면서 여성직원이 교도소의 자연스런 일부로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위해를 느낀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를 포함한 어느 여성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나중에 소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조리사에게도 위해를 느낀 적이 없느냐고 거듭 물었더니 재소자들이 예의도 바를 뿐 아니라, 증범죄자를 수용하는 폐쇄교도소에서조차 전혀 위해를 의식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장점 말고도, 여성을 자연스럽게 접한다는 것이 교도소 분위기를 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흥미할 만하다.

릴베르야 개방교도소는 새가지 점으로 유명하다. 첫째는 소내 공장을 통해 시장 지향적 생산작업을 하고, 그 댓가로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담당교도관이 재소자와 협의하여 재소자 재정계획을 돕고 실천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정기휴가제를 제일 먼저 실시했고, 가장 많은 휴가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매 2주마다 72시간의 휴가를 부여한다.

릴베르야 교도소의 작업은 현대식 기계를 통해 조립식 주택을 만드는 것을 주로 하고, 그 외에 선반·가공작업을 한다. 교도소에서 만든 제품은 중간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판매한다고 한다. 조립식 주택은 주로 별장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한 것이 단점이고, 때문에 불황기에는 교육과 직업훈련에 보다 치중하는 식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임금에 대해서는 애초에 노동시장 수준의 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했으나, 사회적 임금이 너무 빨리 오르고 또 불황의 여파가 교도소에도 미쳐 지금은 그 정도의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다른 교도소의 임금이 시간당 약 8크로나(1크로나당 125원 정도)인데 반해, 여기서는 23크로나로 3배 정도 높은 수준

25) 1997. 1. 30. 방문.



이다. 숙련자의 임금은 25크로나까지 올라가고,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시간당 16크로나 정도를 지급한다. 재소자는 일부를 적립하고, 나머지를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가족에게 송금, 그룹활동비, 물건구매비 등으로 쓴다.

귀휴(歸休)제도에 대해서는 정기휴가는 물론 특별휴가까지 부여하는 교도소의 선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정기적 귀휴제도는 재소자의 석방후 사회적응을 위해 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필수적이며,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곳 재소자들은 2주에 한번 72시간의 휴가를 갖는다. 목요일 오후에 출발하여 일요일 오후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나 단 음주와 마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복귀후에는 음주와 마약 테스트를 무작위로 실시한다. 교도소 입구에 차량이 여럿 세워져 있어 약간 의아했는데, 재소자들이 귀휴를 나갈때 타고갈 차량이란단다.

어느나라나 귀휴를 실시하고자 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도주가능성일 것이다. 뉘베르야의 경우 연간 2000회의 귀휴 중 미복귀율은 1% 정도에 불과하고, 귀소시간을 어겼거나 음주·마약관련으로 적발된 비율이 1% 이내라 한다.<sup>26)</sup>

궁금한 것은 대다수가 왜 도주하지 않고 복귀하는가 하는 점인데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보았다. 형기가 비교적 단기이고, 정기적인 귀휴가 보장되어 있고 소내에서도 자유로운 면회가 가능하니 구태여 도주할 이유가 없다. 개방교도소라 도주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소내에서도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귀휴가 도주율을 유독 높일 이유도 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적합한 상당한 저금을 교도소가 관리하고 있는 점도 부수적인 고려사항은 될 것이다. 귀소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하게 쫓기는 몸이 될 것이며, 잡히게 되면 더이상 귀휴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고 자유가 훨씬 제한되는 폐쇄교도소로 이송될 처지에 놓이는 등의 불이익도 심리적 압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개방교도소의 분위기가 인간적이며, 교도관들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교도소간의 선의의 경쟁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국의 교도소가 일률적인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재소자가 볼 수 있도록 전산망에 띄운다. 그러면 재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를 신청할 수 있다. 뉘베르야 교도소는 높은 임금을 받고 휴가가 잘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개방교도소로 올 조건이 갖추어진 재소자 중에서, 이곳에서 여석이 있을 때 받는다고 한다. 현재 약 17인의 대기자가 신청해있는 상태이다. 모든 재소자가 이

26) 스웨덴 전체적으로도 미복귀 비율은 1%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ckbom, 앞의 글(1995) 참조.

곳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보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공장형 교도소이므로 일을 싫어하거나 치료를 우선적으로 요하는 자는 자신에 적합한 다른 교도소를 택할 것이다.

누구나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폐쇄교도소에 장기간 구금되어 있다가 이곳에 오면 오히려 쇼크를 받고 적응상의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신입재소자들을 위해서 2주간의 입소자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교육내용에는 지켜야 할 규율, 생활규칙, 직업훈련의 기초, 보건 및 식생활교육, 심리상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것도 배운다. 이러한 교육을 거쳐 재소자들은 자기의 시간과 금전, 건강을 자기 책임하에 관리해야 함을 배운다고 한다. 책임감과 자존심을 길러주는 것과 함께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기초를 닦게 하는 것은 개방교도소의 중요한 교육지표를 이룬다. 이러한 입소교육을 거쳐 다음 4주는 본격적인 작업실습을 하게 된다.

행정동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도 특이한 모습이다. 가족들이 면회를 때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가족면회는 토요일일에 허용되며, 가족들은 소내 어디서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가족이 아닌 친구의 경우의 경우에는 행정동의 면회실에서 면회한다. 물론 어느 경우든 면회에 대한 감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식당에 가보니 매우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이다. 재소자 식당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가보니 조별로 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음식은 교도소에서 매우 중시된다. 건강유지를 위한 조리법 강요도 자주 실시된다. 매주 식단이 게시된다. 음식을 만들 때 재소자는 원할 경우 보조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식사 후 공장을 방문해보니, 우선 작업장이 대단히 컸다. 한쪽에는 목재로 조립식 주택을 만들고 있었고, 다른 귀퉁이에는 선반 등 기계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장에 출입할 때는 작업카드에 시간을 찍고, 일할 때는 작업카드를 꽂아둔다. 열심히 일하는 재소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는 듯 했으나 전체 작업진도는 별 영향이 없고, 작업장요의 분위기도 없는 듯 했다. 상당히 현대식 기계를 사용하긴 하지만 왜 다른 작업은 많느냐고 물어보니, 재소자의 성분이 다양한지라 단순하면서도 일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할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변하였다. 아마 목재를 다듬는 일이 주는 심리적 효과도 있을 법한데 이 점은 좀더 생각해볼 일이다. 작업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으려 했더니 재소자 한명이 다가와 자기 얼굴을 넣지 말라고 제지한다. 역시 재소자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는 상당부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장을 나와 재소자들의 거방을 보기 위해 담당 교도관의 사무실로 갔다. 각 사동(舍棟)에 교도관의 사무실이 같이 있는데, 거기서 몇몇 재소자에 대한 신상카드

와 금전내역서를 뽑아볼 수 있었다. 사동 내에서 전화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보행의 자유도 인정된다. 다만 하루 4차례 있는 점호 시에는 자기 방에 있어야 한다. 특별저실이 몇개 있었는데, 거기 재소자들은 주간에는 외부봉근작업을 하고 일과후 귀소한다고 한다.

다른 사동을 방문하니 거기에는 컴퓨터 교실, 샤워실, 체력실 등을 볼 수 있었다. 체력실에는 몇명이 땀흘리며 운동하고 있기에 물어보니 이 곳 청소를 맡은 재소자들이라고 한다. 당구대, 탁구대, 구기를 할 수 있는 실내운동장이 있어 거의 환상적인 느낌마저 든다.

우리의 경우 교도관은 반경역살이의 고달픔에다 외부의 시선도 곱지 않아 맞선을 볼 때 자기 직업을 소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이 곳 교도관<sup>27)</sup>에게 직업만족도를 물어보았다. 자기들의 경우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직업 자체가 재소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것이라 보람있는 일이다. 형기를 마치고 나간 자들로부터 자주 상담편지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또 상대방에게 자기 직업을 말하면 누구나 호기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젯거리가 많아 대화를 끌어가기도 쉽다고 했다. 이렇게 멋있게 직업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백범 김구선생의 말씀을 떠올렸다. 백범 선생은 1910년대 서대문감옥의 죄수노릇을 하면서, "내 민족끼리의 나라에서 감옥을 다스린다 하면...감옥의 간수로부터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를 쓰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국민의 불행한 일원으로 보아서 선으로 지도하기에만 힘쓸 것이요, 일반사회에서도 입감자를 멸시하는 감정을 버리고 대학생의 자격으로 대우한다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토로했다. 간수와 죄수의 사이가 아니라, 대학교수와 대학생의 관계처럼 '선으로 지도하는 데 힘쓸'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스웨덴의 예에서 절실히 느껴지는 대목이다.

(2) 전원중의 아스프루나 개방교도소

아스프루나(Asptuna)는 뉘베르야와 마찬가지로 4등급에 속하는 개방교도소의 하

27) 일선 교도관들과 재소자들이 지속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접근하는 것이 스웨덴 교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간수(prison guard)라는 보안을 연상시키는 명칭이 이제는 접촉인사(contact person)라는 명칭으로 바뀐 데서도 계도의 목표와 관상을 읽어볼 수 있다. 교도관들은 주/야 조로 나뉘어, 주간 담당자는 접촉인사, 야간 담당자는 보안에 중점을 둔 간수형 교도관이 배치된다고 한다. 접촉인사는 재소자에게 상담과 조언, 심리적 사회적 지원, 범죄와 악습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 재소자의 재정계획을 세우는 일을 돕는다. 재소자들의 변화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그의 주임무인 것이다. 이렇게 접촉인사로 변화된 행정 담당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특성 및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즉 무섭고 권위적이고 명령에 충성하는 태도로부터 자기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대화지향적이며, 유연하고 독립적 인격을 지닐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Eckbom, 앞의 글(1995) 참조.

나이다. 담배가 아니라 울타리가 쳐진 모습을 보면서 정문을 들어서니 눈앞에 군대막사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단층 건물 몇채와 약간 멀리 반원형의 호수가 눈길을 끈다.<sup>28)</sup>

아스프루나는 처음에 40명 정원의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지금은 68명의 재소자를 수용한다. 스텝은 소장(Ulf Kjellsson), 부소장, 그리고 25명의 직원이 있고 6명이 상시근무하는 체제다. 직원당 10~15인을 관리하는 셈이다. 신입재소자가 오면 그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제공하고, 생활플랜을 직원과 함께 만든다. 직원은 재소자에 대한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상담도 한다.

재소자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작업을 하며, 가끔 소의 작업도 한다. 작업의 종류는 목공, 영농, 조리, 교육, 그리고 외부봉근작업이 있다. 컴퓨터실이 있어 몇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서 재소자들의 컴퓨터교육도 있다. 임금은 시간당 7.6 크로나로 일반교도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뉘베르야의 1/3 수준이다. 한주에 304크로나의 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직업훈련 및 교육에 드는 시간에도 같은 임금이 지급되며, 질병으로 일 때에는 시간당 3.4크로나 정도가 지급된다. 정상 작업은 물론 교육훈련, 심지어 질병시에도 일정한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다.

재소자가 자신의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교도소측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아스프루나는 그 점에서 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재소자의 수입과 지출은 교도소측에서 정확히 관리하여 수치내역을 재소자에게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몇명의 수치표의 샘플을 얻어보니, 거기에는 작업수익과 현금지출 외에도 정기휴가를 위해 매주 15크로나 정도를 적립한 것이 눈에 띈다.

담배와 신문은 개별적으로 구입한다. 편의품들은 주 1회 외부에서 와서 판매한다. 커피와 차를 자유롭게 끓여 마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느 교도소든 술과 마약은 엄격히 금지된다. 알콜에 대한 스웨덴의 제한주의는 역사적 산물이다. 한세기 전만 하더라도 스웨덴인들은 보드카 류의 독주를 즐겨 마셨다고 한다. 19세기 말부터 노동운동과 금주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었고, 그것이 20세기 선진산업국으로 도약하는 정신적 기틀이 되었다. 1930년대부터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배급제나 전매제와 같은 갖가지 방법으로 알콜을 규제했고, 그에 따라 술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되었다. 지금도 지도층일수록 금주하는 전통을 지킨다. 범죄자에게 알콜을 금지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사회의 알콜 소비량과 폭력범죄(살인·폭행 등)와의 긴밀한 함수관계에서 구해진다. 스웨덴을 대학의 헨릭 탐(H. Tham) 교수는 양자간의 관계를 도표화하여 알콜소비와 폭력범죄의 비율이 거의 일치함을 입증한 바

28) 1997. 1. 29. 방문.



있다.

마약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와는 달리, 스웨덴은 마약에 엄격한 처벌을 한다. 판매는 물론 단순소비도 최근에는 처벌받게 되었다. 교도소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마약의 밀반입과 마약거래이다. 알콜과 마약사용이 적발되었을 때 주어지는 징벌은 5일까지 행기를 연장하는 조치이다. 의심날 때마다 소변검사 등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마약의 경우 입소시 테스트를 한 뒤 수시로 검사를 실시한다. 재소자가 마약과 알콜측정을 거부할 때는 강제 검사는 실시하지 않으나,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소내 규율에 적용하지 못하는 자로 간주하여 다른 교도소로 이송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폐쇄교도소로의 이송, 정기휴가의 연기, 외부통근의 연기 등은 경미한 징벌보다 사실상 제재효과는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교도소의 입소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1년 미만의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는 처음부터 여기에 입소할 수 있다. 다른 부류는 장기형을 살다 잔형이 6-8개월 정도일 때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로 개방교도소로 이송되어오는 경우이다. 그러나 처우내용에 있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곳에서도 물론 귀휴제도가 시행된다. 매2개월마다 144시간의 귀휴가 허용되는데, 가끔은 72시간을 먼저 쓰고 또 72시간을 쓰는 식으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범죄를 저지르면 귀휴는 물론 허용되지 않는다. 귀휴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만으로는 도주죄와 같은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규율위반으로 처리된다. 정기휴가 이외에 특별휴가도 있는데, 재소자에 대한 법정절차가 있거나 변호사면담, 사회복지요원과 면담 등의 경우나 배우자가 아플 때 특별히 인정된다.

모든 개방교도소에서는 서신검열은 전혀 없다. 전화도 24시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단지 휴대용 전화만 금지된다. 재소자와 교정직원 모두 간편한 사복을 입고 근무한다. 교정직원은 한 교도소에 계속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장은 여기서 5년, 부소장은 15년을 근무했고, 27년동안 근무한 교도판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 교도소에 계속 근무함으로써 자기 교도소에 대한 애착감을 갖고 교도소를 가꾸게 되는 것임이 있다고 한다.

외부인사의 면회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허용된다. 면회시에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약과 알콜의 반입을 검사하기 위해 방문객을 검사할 수 있고 소지품도 조사할 수 있으나 강제로 할 수는 없다. 다만 조사를 거부할 경우 면회를 불허할 수 있다. 점전장소는 특정되지 않고, 재소자의 방이든 야외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성적 접촉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교도측은 그 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략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교도소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단층의 막사같은 행정동 옆에 pavillion이라 불리는 별관과 재소자의 거주실이 있었다. 별관에는 운

동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었고, 당구대와 탁구대를 볼 수 있었다.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어도 좋으나 했더니 재소자의 방이나 얼굴을 찍을 때는 재소자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한 재소자의 방을 그의 승낙을 받아 들여다보니 침대와 책장, 책꽂이, 텔레비전, 옷장,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맑은 날씨를 즐기면서 호수 쪽으로 접근하니, 거기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고 탁자와 야외바베큐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었다. 보트도 있어 여름에는 가끔 타기도 한다고, 도중에 양, 닭, 돼지를 몇마리씩 기르고 있었는데, 상업용보다는 재소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것이라 한다. 전체적으로는 한적한 대학캠퍼스와 같은 인상이었고, 재소자의 방의 설비와 청결함은 대학 기숙사보다 나았다.

점심식사 후에는 작업장을 방문했다. 몇몇 재소자들이 생선을 담을 나무상자를 만들고 있었다. 약간의 숙련도만 있으면 1시간에 60개 정도를 조립할 수 있으며, 제품은 수산회사에 공급한다고 한다. 이전에는 목재 액자 등도 제작했으나, 지금은 생선상자만 만든다고, 필베르야에 비하면 공장은 아담한 크기였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는 모양이다. 하지만 공장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농촌적 분위기에다 정서적 순화에 도움이 될 시설이라는 인상이었다.

(3) 담벽 속의 자유, 쾀름 폐쇄교도소

스웨덴에서 가장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1급 폐쇄교도소인 쾀름 교도소(Kumla closed prison)는 스톡홀름으로부터 3시간 떨어져 있다.<sup>29)</sup> 한적한 시골역에 내리니 소장(Arne Granell)이 기다렸다가 자기 차로 교도소까지 안내했다. 무시무시한 교도소라 들었는데, 겉보기에는 그리 웅장하지 않고 산뜻한 직사각형의 담벽속에 들어있는 건물이다. 이 지역에 교도소를 지을 때 지역사회의 반대가 없었느냐고 하니 여기서도 그러한 어려움은 적지 않은 모양이다.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교정직원들도 여기서 같이 생활하는 데 결코 안전상의 문제가 없음을 납득시키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미터의 높은 담도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여 외부환경과의 조화를 꾀하였다.

소장실로 직행하여 교도소의 개요를 우선 들었다. 원래 310명을 수용정원으로 하여 지어졌으나 현재 210명이 수용되어 있고, 그 규모는 스웨덴 최고라고 했다. 그러나 몇천명의 수용을 예상로 하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수용인원이 가장 적은 편에 해당할 것이다. 직원은 300명 정도이며, 그 중 35-40% 정도가 여성이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며 답했는데, 사실 직원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 것은 더이상 중요한 의미가 없는 모양이었다.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이기여 여성직원의 비율이 낮을

29) 1997. 1. 31. 방문.

것이라는 한국식 예측은 여기서도 빗나갔다. 여성의 유일한 제약이라면 소변검사를 실시할 때 약간 곤란한 정도랄까.

전체적 구조는 가운데가 행정구역이고 좌우로 특별사동구역과 일반사동구역이 있고 일반사동의 옆에 공장이 있다. 각 구역 사이는 지하통로로 연결된다. 지하통로의 총길이는 600미터 정도이다. 나중에 지하통로를 가보니 벽면 전체에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 굉장한 작업은 2명의 벽화가를 고용하여, 내부 재소자의 보조를 받아 이루어졌다고 한다. 1970년대 초반 스웨덴 교도소에서 커다란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을 때 재소자들은 이 지하통로를 철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 불만을 고려하여 더이상 음산한 분위기를 느끼지 않도록 밝은 벽화를 그렸다고 한다.

스웨덴의 1급 폐쇄교도소는 모두 3개인데, 여기는 장기형을 선고받은 자와 일반 교도소에서 관리 곤란한 자를 수용한다. 여기서도 가장 위험한 분자로 취급되는 자는 탈출가능성 높은 자, 외부와 연계하여 마약거래를 하는 자,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꼽힌다. 탈출을 막기 위한 시설로는 높은 담을 이중으로 둘러치고, 모든 문과 벽에는 감시카메라를 작동시키며, 중앙통제실에서 집중감시를 하는 것이다. 지하통로도 탈출을 곤란케 하는 시설의 일환으로 고안되었다. 그동안 어느 정도의 탈주자가 있었는가 물어보니 32년의 역사에서 25명이 탈출하였다고 한다. 나중에 둘러보니 탈출한 자들이 사용한 도구와 재소자로부터 압수한 마약도구 등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그것도 재미있는 착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용자 중 2/3는 외국인이라고 한다. 나중에 마르텐스(P. Martens) 교수의 논문<sup>30)</sup>을 찾아보니 스웨덴에서 외국인범죄의 비율은 대략 15 내지 20% 정도인데, 이는 거주외국인수가 5% 내외인데 비하면 약 3배 정도의 범죄율을 보이는 셈이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일수록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 1990년 통계를 보면 살인의 경우 30%, 강간의 경우 40%, 강절도의 경우 22%, 마약범죄는 18%, 교통범죄는 15%가 외국인이었는데, 최근에는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이민유입자의 증대로 말미암아 더욱 증대하는 경향이다. 때문에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쾀름교도소의 경우 외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되었다.<sup>31)</sup>

폐쇄교도소에서 면회는 면회실에서 이루어진다. 소내에는 모두 5개의 면회실이 있는데, 3개는 3인 정도가 입실할 수 있고, 2개는 5-6인이 입실할 수 있는 규모이다. 면회신청은 전화로 하고, 사전에 신청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주에 한번씩,

30) Martens, P. *Criminality among foreign citizens in Sweden*. Nordisk Kriminologi (1992), 1, p.28.

31) 북한인도 1명 있었는데 7년전 마약거래로 처벌된 것이라 했다. 연민의 느낌이 들어 면담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부소장이 전화로 의사를 타진하였던 바, 그 쪽에서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 먼 곳까지 남북한의 불신의 그림자가 남아있어 순간적으로 안타까운 느낌이였다.

한번에 2시간 정도의 면회가 이루어진다. 폐쇄교도소라 할 지라도 가족간 면회를 감시하는 것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 이외의 경우에는 교도판도 동석한다. 이렇게 제한적인 면회를 하는 이유는 마약반입 금지가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밖에 범죄도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폐쇄교도소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통화를 임의대로 하지는 못한다. 통화를 원하는 재소자는 전화를 들고 교도판에게 연결을 요청하면, 교도판이 수화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연결시켜준다. 교도소측은 재소자의 가족명단과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 가족과 통화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으며, 통화내용을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주지시킨다. 실제로 가족이외의 자와의 통화는 빈번하게 청취하지만, 가족간 통화는 의심날 때 한해 제한적으로 청취한다고 한다. 일종의 징벌에 해당하는 특별사동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통화는 더욱 제한된다. 하지만 거기서도 통화가 언제나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다.

장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보통 쾀름과 같은 1등급 교도소에서 형을 시작한다. 7년 형을 받은 재소자라면 대략 3년 정도를 여기서 보내고 이후 순차적으로 나온 등급으로 이송된다. 형기가 길수록 1등급 교도소가 최종지인 셈이다. 스웨덴은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무기형이 최고형인데 전국에서 대략 65-70명 내외의 무기수가 있다고 한다. 50여명의 사형수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고, 1000여명의 무기수가 살고 있는 우리의 경우가 어떻게 비추어진다.

어느 나라나 교도소 재소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중범죄일수록 남성의 비중도 높아진다. 때문에 폐쇄교도소의 경우 특히 성적 박탈감으로 인한 폭력과 호모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고민한다. 여기서 재소자들이 느끼는 성적 박탈감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무감동면회 덕분에 그러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했다. 스템들이 그런 문제를 의제로 논 의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 역시 가족간의 면회, 개방적 교도소의 경우 정기귀휴제의 실시 등의 요인이 교도소내의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셈이다.

스웨덴의 현대교정은 1970년대로부터 비롯된다. 70년대 전반에 전국교도소에서 재소자조합이 결성되었고, 대규모의 단식투쟁이 있었다. 5000여명의 재소자 중 절반이 거기에 가담했고, 법무부에서는 재소자 대표들과 면담하여 요구를 정리했다. 재소자들은 주로 귀휴제의 실시, 점전기회의 확대와 점전시 감독을 하지 말 것, 재소자의 프라이버시 존중, 전화부스의 설치, 서신검열의 중지, 교도작업에 대한 임금의 인상, 재소자조합의 인정 등을 내세웠다. 법무부측은 재소자의 집단적 권리는 부인했지만 나머지 요구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하면서 행정법을 개정하고 교정제도를 개편하였다.<sup>32)</sup>

32) 1970년대 초의 감옥폭동 및 감옥개혁운동은 전반적인 행정방향을 제정정화도록 했으며, 몇가지 분야에서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재소자 측과 교도소 측의 성실한 대화의



풀라교도소에서 이러한 감옥폭동의 양상이 이따했던가 물어보니, 71년 바깥에 있는 정치집단과 연계된 폭동이 있었고 항의시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또 지붕창문을 깨고 옥상에 올라가 항의시위도 했고, 담밖에서는 연대시위를 하는 등 굉장했다고 하면서 그 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뒤 법무부에서 개선사항을 마련한 뒤로부터 집단적 움직임은 수그러들었고, 요즘은 가끔 한두명이 단식농성을 하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재소자들의 의견을 교정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교도소측은 각 색선별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주 1회 재소자 대표와 교도소측이 회의를 한다. 이 회의에서는 재소자의 관심사와 고충사항이 논의된다. 재소자와 교도소측의 대화내용은 기록되며, 그 회의록에 재소자대표와 부소장이 각각 서명을 하고 한부씩 나눠 갖는다. 재소자의 관심은 주로 식사, 이송, 전화, 신체검사 등에 집중된다. 재소자의 대표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가끔 문제점을 느끼지 않는가 물었더니, 자신들은 회의를 통해 재소자의 관심을 확인하고, 재소자의 불만을 예방하며, 교도소측의 방침을 이해·전달하는 통로도 활용할 수 있기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한다.

소내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교정직원의 사기와 재량권에 대해 물어보았다. 교도소장은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지만,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부소장이나 각 구역의 책임자도 자기의 직분 범위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재량권의 부여는 곧 교정활동을 위한 동기부여의 의미도 지닌다. 교도관의 전직 이직율이 대단히 높은 우리 실정을 생각하며 교도관들의 자부심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추론해보니 ▲자기 직분 범위내의 재량권의 존중 ▲한 교도소를 자기의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쏟는 정성 ▲직원 수가 많아 피로도도 다른 직업과 차이가 없다는 점 ▲재소자와 긴장관계에 놓여있지 않고, 재소자에 대한 상담과 생활지도를 통해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sup>33)</sup>

결과 폭동과 위기는 건설적인 방향의 개혁안으로 수렴되었다. 의회도 새로운 안을 인정했으며, 그에 따라 전면적인 교정개혁의 단계를 밟았던 것이다.(상세는 한인심, 복구의 형사정책 연구·행벌 및 행벌의 이론과 실제(1994), 34쪽 이하; Mathiesen, T. & Roine, W.(1975), "The Prison Movement in Scandinavia", in Bianchi, H. et al.(eds.), *Deviance and Control in Europe*, London: John Wiley & Sons, p.85 이하 참조.)

1974년부터 새로운 법률 및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새로운 교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범죄에 대한 반응으로써 프로베이션을 가능한 확대한다. ▲사회적 서비스 및 지지기관에 대해 수행자는 다른 시민과 같은 접근권을 가진다. ▲수형자는 시설내 보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의 가정과 가까운 지역교도소(local prison)에 거주한다. 이는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서비스 및 지지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33) 최근의 주목할 만한 행벌실무상의 변화의 하나는 교정체계의 탈집권화 경향에서 보여진다. 우선 전제 교도소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구조가 대폭 바뀌었다. 교도소장이 전권을 휘두르던 체제로부터 지금은 재소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선 교도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대폭 이

식사 후 소장의 안내로 특별사동을 먼저 방문하였다. 방이 모두 12개 정도 있는데, 현재는 3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아마도 스웨덴에서 가장 위험하고 까다로운 범죄자가 수용되어 있을 이곳에서는 여성 교도관 2인과 1인의 남성교도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여성이 근무하기에 위험하지 않느냐고 또 한국식 질문을 던졌더니 그런 우려는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활동할 때는 직원 3인이 1조가 되어 움직이며, 수용자수가 늘면 그에 따라 교도관 수가 늘어난다. 재소자의 거실은 이제껏 본 것 중에 가장 열악했다. 침대 하나와 변기 하나가 있으며, 텔레비전도 탁자·의자도 없었다. 또 방문을 안에서 잠글 수 없고 밖에서만 열쇠로 여닫게 되어 있었다. 운동도 한정된 공간내에서만 허용되는데, 그래도 운동장은 농구장 정도의 크기는 축히 되어보였다. 여기서도 정교한 전자감시장치가 작동하지만, 거실 내부는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칙이다. 심한 경우에는 문을 일부만 열고 손을 내밀게 한 다음, 수갑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면서 도구(수갑, 방패, 문고리)를 보여준다.

지하통로를 통해 백화점 감상하면서 특별사동에서 공장으로 곧바로 이동하였다. 공장에는 현대식 기계가 들어가고 있으며, 기계의 성능이나 제품의 질이 텔레비야보다 오히려 더 우수하지 않는가 느낌이였다. 장기수의 경우 숙련도가 더 높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기능공들이 와서 기술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전문평가단이 와서 엄격히 심사한후 기능자격증을 정기적으로 부여한다고 한다. 일하는 재소자들이 얼마 보이지 않기에 물어보니 오후중의 휴식시간이다. 작업중 휴식은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 규정되어 있다. 여러 재소자들이 휴게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돈내기 게임이 아니면 체지방 사합이 아니라고 했다. 다른 쪽을 가보니 열심히 신발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옆에는 바코드를 제작하기도.

일반사동으로 이동해보니 여러 재소자들이 휴게실에 모여 담소하고 있었다. 발탁 3국에서 온 자, 흑인, 터키인, 남미인 등 여러 인종이 섞여 있었다. 모두 쾌활한 얼굴로 대화하는 분위기에서 교도소가 주는 긴장감이 별 느껴지지 않았다. 당시나라의 재소자는 어떤 대우를 받는가 물기에, 이 곳을 방문한다면 별천지라 생각할 것이라고 답변할 수밖에. 근무시간 중에 왜 공장에 안가고 여기 있는가 물어보니 바로 자기들은 청소, 세탁을 담당한다고.

한 재소자의 거실을 그의 허락을 얻어 들여다보았다. 개방교도소의 거실과 마찬가지로

양되었다. 일선 교도관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재소자의 수용, 계획, 프로그램, 귀류 등에 책임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상부의 개입은 장기수 및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경우에 국한된다. 과거의 경직 때문에 여전히 권위적이고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층부들 새 시스템에 적응시키기 위한 연수를 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탈집중화된 책임(decentralized responsibility)의 구조는 모든 경우기구의 탈집중경향과 부응하는 방향이기도 하며, 교정행정이란 특별히 예외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지로 침대, 책상, 의자 2개, 텔레비전이 비치되어 있었고, 서가에는 상당히 많은 책이 꽂혀있었다. 어디서나 1인 1실은 부인할 수 없는 원칙임이 확인된다. 항공기 관련 책이 많이 꽂혀 있기에 물어보니 전직 파일럿트였는데, 마약거래와 관련하여 여기에 오게 된 듯하다. 계속 한국실정을 물어보는데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 무엇보다 재소자들의 표정이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 가장 놀라웠다.

일반사동에는 탁구장, 체력실, 농구와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아랫층에는 사우나와 샤워시설이 있었다. 사우나도 있느냐고 하니 복구에서 사우나는 사치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중범죄자를 수용한다는 시설에서 재소자들과 아무런 긴장없이 보행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일견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다시 행정실로 돌아와 마무리 정리. 스웨덴은 복지제도는 교정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고 물었더니, 교도소는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답변부터 시작하였다. 소장이 보기에 교정복지는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10년 정도 뒤쳐져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최근의 경제불황이 교정복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감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재소자의 생활처우를 낮추는 방향으로 예산운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깔고 있다고 한다. 결국 예산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감축과 시설유지비의 감축 밖에 없는데, 지난 3-4년간 40명의 직원을 감축해야 했다고. 물론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을 받고 전직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다. 예산감축의 또다른 측면은 재소자의 임금을 올릴 수 없는 데서도 보인다. 시간당 8크로나의 수준으로 현상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식사와 생활처우를 악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구의 교정복지는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예외적인 수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더니 소장도 물론 공감한다. 라트비아 교도소를 최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매우 열악한 처우에 놀랐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나중에 만난 스웨덴 교정의 전문가인 노만 비숍(Norman Bishop)은 스웨덴의 선진적 교정복지는 한편으로는 그나라의 경제수준과 관련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소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열악한 범죄자 처우는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시민적 자각에 비례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중산층의 반응과 지지가 선진복지를 가능케 하는 원천이라는 것이다.<sup>34)</sup>

(4) 최신식 설비의 후딩에 구치소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후딩에 구치소(Huddinge remand prison)까지는 1시간 정

34) 1997. 1. 31. Norkoeping 시에서 면담.

도 걸린다.<sup>35)</sup> 스톡홀름 시청앞서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입구를 알 수 없어 아무데나 누르니 목소리가 들린다. 나중에 알고보니 중앙통제실에서 폐쇄회로를 통해 누가 접근하는지 원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소장(Hans-Olof Larsson)을 만나보니 최근에 신축한 구치소라고 했다. 보통 스웨덴의 구치소는 경찰서 건물의 윗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관이 구치소로 와서 직접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서 위층에 구치소를 두게 되면 여러 치우상의 문제점이 노출된다. 특히 운동장을 옥상에 만들수 밖에 없고 운동시간도 확보해주기 쉽지 않으며 상호접촉도 어렵다. 시설을 개량하려 해도 건물 상층부에 있어 쉽지 않다. 때문에 비인도적이고 풍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교문 및 비인도적이고 풍위를 저하시키는 처우·형벌의 예방을 위한 유럽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이 위원회에서는 그밖에도 환기장치와 차광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sup>36)</sup> 스웨덴 정부도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했지만, 기존의 시설로는 한계가 있어 아예 인권의 기준에 맞는 최신 구치소를 신축한 것이다.

건물은 중앙부와 양 날개로 되어 있는데, 4~7층이 구치소로 사용된다. 각층의 날개마다 12명 정도의 미결수용자가 있고, 작은 실내 체력장과 세탁장이 있었다. 실내체력장에는 기본운동용구가 잘 갖추어져 있다. 걸음으로 보기에 몇백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천만에도 수용정원은 120명이었다. 구치소내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고, 1주에 두번씩 신문과 출판물, 파자류 등을 판매하는 이동식 키오스크가 오며, 요청이 있는 경우 시내서점과 연결하여 책을 구입할 수 있게 알선한다.

외부와의 통신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전화는 긴 줄이 달린 전화기를 바퀴달린 수레로 운반하면서 통화를 원하는 재소자의 방안에 가서 번호를 눌러주고 수화기를 방안으로 넣어준다. 미결수의 경우 공모나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통화의 비밀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화 자체는 개인적인 사항이기에 허용하며, 언제든지 감청할 수 있다고 할 뿐이다. 다만 변호사와의 통화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 따라 절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수용자의 방을 하루 한두번 들여다보며,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노크를 한 뒤 열쇠로 문을 연다.

거실은 1인 1실의 원칙이다. 수용정원이 찬 적이 없으므로 이 원칙은 잘 지켜진다. 방안에는 침대와 책상, 의자, 텔레비전이 비치되어 있으며, 작은 화장실도 있다. 차광과 환기장치는 유럽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기술적으로 잘 개선해놓았다. 그렇게 폐쇄회로가 둘러쳐 있어도, 각 방안을 폐쇄회로로 엮는 것은 법률상

35) 1997. 1. 24. 방문.

36)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tatement concerning the Report of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95. 9. 21. 참조.



허용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재소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한 배려가 있는 것이다.

운동은 하루 1시간 정도로 규칙화되어 있고, 외부운동장과 간막이처리된 옥상은 동장, 실내 체력장에서 운동할 수 있다. 특히 건물의 상층부에 구치소가 위치한 결합을 완화하기 위해 지상에 운동장을 설치하여, 재소자들이 땅을 밟을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식사는 20명 정도를 수용하는 작은 식당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음식은 조리담당직원이 만든다. 교정직원들은 별도의 통에서 식사하지만, 식사의 종류는 재소자와 같다. 그래서 재소자들이 식사에 대해 불평할 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했다. 단기간 머무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작업은 개별방에서 단순한 종류의 것만 가능하다. 간호사는 정식 직원으로 상주하며 외사는 주 몇시간의 단위로 진료계약을 맺어, 이 의사가 시설에 와서 진료와 처방을 내린다.

외부와와 접촉은 교화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는지라, 수용자의 면회는 주3회 정도 허용되며, 면회시 마약소지 등과 관련하여 신체검사가 있을 수 있다. 수용자는 면회 전후에 신체검사를 받는다. 면회실 내에는 작은 책상 1개와 의자 2개, 긴 소파가 하나 있었다. 면회시간은 1시간 이내이다. 면회실 내부를 엿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여건상 성적 접촉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재소자는 재복과 사복 중에 택일할 수 있다. 소내에서 다수는 재복을 입지만, 외부로 출입할 때는 사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사복착용권이 보장된다. 사복을 착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잘 훈련된 전문수송반이 보안장치가 잘 된 차량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않는다고 했다.

교도관들이 보안과 탈출방지에 신경을 쓰다보면 교화적 측면은 그만큼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전장치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첨단감시장비가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어, 인도적 행형도 교도의 전자통제망 하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불쑥 들었다. 수용자의 방과 복도, 시설을 둘러본 느낌은 웅침한 감옥이 아니라 깨끗한 병원의 그것이었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 시설과 치우, 자유제한의 정도 면에서 구치소가 교도소보다 열악한 느낌이었는데, 유럽위원회의 개선권고도 구치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데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V. 「선진교정」을 향하여

스웨덴의 교정제도는 국제적 수출품이자 연구자들을 유인하는 상품이다. 나보다 두달전 스웨덴의 교도소를 방문했던 한 일본인 교수는 시설을 둘러본 후 「그런데

교도소는 어디 있습니까」고 우스개로 되물었다고 한다. 전체적인 인상은 어둡고 칙칙한 수용소가 아니라 쾌적하고 청결한 캠퍼스나 병원과 같은 것이다.

나에게 스웨덴 생활의 이모저모를 가르쳐주었던 한 시민(Eva Abelin)은 기관을 방문하여 공식적 안내와 설명을 듣고 그것이 제도의 전부인양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의를 주었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도 많은 문제점에 둘러싸여 있고, 사회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모습을 띤 사회주의이며, 개인을 국가앞에 대단히 취약한 존재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하나의 스웨덴의 수출품인 의회 음류조만 제도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당간의 합의로 선출되는 까닭에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고, 문제에 대해 강제력을 갖지 못해 이렇없는 호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까다로운 사건에는 결결 고는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발견된다.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더욱이 재소자들의 느낌,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 일반 시민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만 그 사회속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이 이미 잘 조율된 방문일정에 따라 재소자가 아닌 교도소 측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조사란 수박겉핥기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그래도 수박을 보고, 껍을 함으면서 속내용을 들여다보려 진력한 것은 낙후된 우리의 교정현실에 대한 출구와 시사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의 재소자 수는 그나라의 범죄의 질량과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과거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엄격한 사회통제 하에 범죄수는 적었지만, 거대한 수용소 군도가 작동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북구에서 인구 10만명당 구금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는 핀란드였다. 그러나 핀란드는 형법개혁과 행형개혁을 통해 지난 20년간 구금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범죄율은 오히려 증가되었는데도 말이다. 이는 형법수준이 범죄수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라의 형사정책의 기초와 형법관, 나아가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반영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무엇보다 정치체제가 억압적이고, 경제적 불균형이 심할수록 구금율이 높아진다는 경험적 조사도 나와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높은 구금율과 가중된 형량, 억압적 형사정책관이 비판되지 않으면 안된다.

혹독한 형벌을 통해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사상도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비인도적·억압적 정벌은 단기적인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범죄자의 악감정과 보복심을 증대시킨다. 교정여건의 악화는 재소자의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그 부정적 감정은 지역사회내의 범죄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데 대한 시민적 자각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헌법조항은 범죄한 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자유형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범죄의 댓가로 자유형이 주어질 때 그것은 인간의 소중한 자유를 박

탈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부가적 고통을 파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교도소에 있더라도 자신만의 공간은 최소한 주어지며, 시설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한다.

자유형이 가족친체에 대한 고통으로 확대되어 가정과피해 효과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소자와 가족간의 접점이 충분히 허용되어야 한다. 가족간의 친밀감과 애착감을 누릴 수 있도록 교도소측의 감독은 최소한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부부간의 신체적 접촉과 정서적 교감을 할 여지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을 범죄예방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라 할 때, 가족간의 접촉과 애착이 크질수록 재범의 위험성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외부와의 전화통신의 기회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역형은 재소자에게 작업을 강제하지만, 그 작업의 댓가까지 박탈해서는 안된다. 재소자는 시민이지 국가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행형법에는 임금인 아닌 작업상여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예에서 보듯이 임금제도의 실시는 석방후 자금을 적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정작업의 종류도 보다 생산적이고 현대적이어서,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을 곧바로 사회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교도소를 지역사회와 가능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폐쇄교정이 원칙이 아니라 개방교정이 원칙으로 되어야 하고, 장기형을 받은 재소자라 할지라도 점차 개방교도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자기개선의지가 생겨날 것이다. 단기형을 받은 자를 폐쇄교도소에 수용함은 범죄와의 접촉을 강화하는 반면 교정효과를 감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보다 개방교도소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자유를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게 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귀휴제가 정례화될 필요도 절실하다.

교정처우의 개선에 대하여 예산타령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정당국의 의식과 시민들의 가치관을 달리할 때, 돈이 들지 않고도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분야도 얼마든지 있다. 교도소 내에서 담배와 기호품(커피차) 등은 당연히 허용될 만하다. 자판기만 설치하면 추가비용도 들 필요도 없다. 목조건물 시대의 교도소에는 화재위험을 우려하여 담배를 금할 수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금할 이유가 없다. 담배를 허용하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교정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정직원들의 높은 이직율과 사기저하도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교도소를 보다 소형화, 다양화하여 교정직원들이 관리와 보안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정과 상담 위주의 전문복지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녀가 같이 있는 공간이

자연스러운진대, 교도소에도 여성인력이 활발히 진출하여 교정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의 제도와 운영이 당연하고 자연스런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교정시설도 무엇보다 인간적 품위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교정에서 가장 시사받을 점은 형벌을 집행하되, 인간의 가치와 품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Abstract)

### A Visiting Research on the Swedish Prisons and Penal Practices

In Sup Han\*

This is a visiting research of the prisons and penal practices in Sweden. I visited Sweden and Finland for two weeks from January, 1997. I discussed with a variety of experts who majored in criminology and penology, and practiced in the penal systems in Sweden and Finland. My original aim was to survey how the so-called most advanced Swedish prisons work, and how the people response to their penal systems. From my research tour, I could not only visit the prisons but also touch the changing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in Sweden.

Some experts commented the policy orientation in Sweden has shifted from the welfare approach to the repressive approach. But, such a comment might be correct within the Sweden. Swedish policy might be situated on the edge of welfare from the comparative spectrum.

New kinds of sanctions in the relation to the probation been introduced since the late eighties of the last century. In addition to the community service, the contract treatment is exercised. By the contract treatment means that the short-term imprisonment should be suspended under the condition of the treatment assigned to the person under influence of drug/alcohol. New experiment in penalty is to introduce the intensive supervision with electronic monitoring. Offenders may be sentenced, by their applications, to serve the electronic monitoring only as an alternative to the imprisonment for 3 months or less, not as a kind of probation. Three years of experiment is reported to be satisfactory, despite the dissent opinion afraid of the net-widening effect of such a new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penalty.

The prisons I visited during my stay in Sweden ranged from a remand prison(Huddinge), two open prisons(Asptuna, Tillberga), to one closed prison(Kumla). From the eyes of a Korean scholar, the most impressive things were as follows :

The openness, normalization, and community-oriented approach as a basic principle.

The salary system to the prison labour instead of the nominal bonus system.

The unsupervised visitation program and the opportunity to furlough.

The one-room for one-prisoner, similar to a dormitory room instead of the typical solitary confinement.

The existence of female prison officers numbering more than 1/3 of all officers instead of the masculine atmosphere.

The communicative attitude of the prison officer called contact person instead of the prison guard, and

The clean and high-quality articles including the athletic tools, and coffee machine in the self-cooking places.

The lesson from Sweden is the assertion that the standards of prison in one country don't reflect the seriousness of the crimes but the dignity and tolerance of the people of the country. The prisoners need to be cared, educated, treated, and rehabilitated. As a person with the dignity of human being, the prisoner should maintain the contact with outside, and his privacy and freedom should be affirmed and respected so far as the requirement of the security of the institution is not endangered. Swedish model in penal spheres might be the future to many countries aspiring more humane, more advanced prisons and alternatives to them.

19407060

2 표 상 제

### I. 머리말

## 獨逸行刑法上 受刑者の 法的地位와 權利救濟節次

(Rechtsstellung und Rechtsbehelfe des Gefangenen im Deutschen-Strafvollzug)

趙相濟\*

受刑者の 교도소 수용관계를 소위 特別權力關係로 바라보던 시각은 오늘날 퇴조하고, 受刑者도 국가와 一般의 法律關係에 있음이 인식됨에 따라, 先達諸國의 行刑立法의 경향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憲法精神을 이념적 출발점으로 하여, 受刑者가 受刑中에 제한받는 自由의 구체적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法律로써 규율하려고 하며, 동시에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자유시민과 마찬가지로 受刑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의 行刑도 특히 1960년대에 교정이념이 채택된 이후 그 제도나 운영면에서 괄목할 만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우리 行刑法은 受刑者와 國家와의 관계를 아직도 오직 特別權力關係로만 인식하여 受刑者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과 再社會化處遇의 具體化라는 측면보다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拘禁을 확보하기 위한 단순한 관리운영이라는 측면만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行刑法에는 受刑者의 法的地位에 관한 原則規定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受刑者의 自由를 제한하는 개별규정들도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거나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도소장에게 자유제한의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受刑者에 대한 人權侵害의 소지가 크다.

또한 受刑者의 權利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法的地位의 定立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適切한 不服救濟制度의 마련이다. 이 때문에 각국의 行刑立法은 受刑者의 權利救濟를 위한 法的手段을 광범위하게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를 行刑關係에서 判例나 行政審判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의 현행법상 인정되는 救濟制度는 行刑法上의 請願, 所長面會와 行政審判<sup>1)</sup>에 따른 行政審判 및 行政訴訟法에 의한 抗告訴訟, 그리고 憲法訴訟審判의 請求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特別權力關係로 受刑關係를 이해하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우월한데다, 受刑者의 권리지위의 확립이라는 事前的 保障이 미흡한 현행 法制 아래에서는 그 實效性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sup>2)</sup>

\* 啓明大學校 法科大學大 公法學科 助教授

1) 行政審判法은 종전의 新罰法(1951)에 대체하여 法律 제375호로 1984년 12월 15일에 제정된 것이다.  
2) 실제로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한 자가 行政訴訟法에 의하여 법원에 救濟申請을 제기하는 데 아무런 자장이 없으며, 심지어 1982년의 대법원 판결(大判 1982. 7. 27. 80 누 86)이 特別權力關係에 있어서도 違法·不當한 特別權力의 발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위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더 이상 特別權力關係라는 이유만으로는 受刑者의 抗告訴訟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本議에서는 비록 치엄적이긴 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法制의 一例로써 獨逸行刑法上의 受刑者の 權利地位(및 權利制限의 原則) 그리고 權利制限의 大 3 등을 살펴 보기로 한다.

## II. 現行 獨逸行刑法의 成立

### 1. 소위 特別權力關係理論

종래 국가와 수형자와의 관계는 행정법학에서 소위 특별권력관계로 불리우는 영역의 일부로 받아들여 졌다. 獨逸行政法의 아버지인 오토 마이어에 의해 체계화된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와 같은 一般權力關係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特別權力關係에는 法律의 留保(Vorbehalt des Gesetzes)原則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그러한 관계에서 내려지는 命令(Anordnungen)은 法的 性質이나 效力을 가지지 않는다.

이 점을 교도소와 受刑者와의 관계에 적용하게 되면, 교도소 당국은 필요한 경우 법률의 근거 없이도 受刑者의 基本權을 제한하는 命令을 내리고 懲罰할 수 있으며, 受刑者는 그 命令·懲罰의 適法性 여부에 관하여 司法審査를 구할 수 없게 된다. 그 점은 특히 "受刑者의 權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그것이 刑罰目的의 달성과 그 목적을 통해 설정된 교도소관계의 본질의 수행에 필수적인 한 적법하다"는 당시의 하급심 판결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獨逸에서 소위 特別權力關係理論의 절대적 우위는 1949년 西獨基本法(이하에서는 GG로 표시)이 제정·시행된 후에도 약 2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따라서 70년대 초반까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受刑者에 의하여 제기된 抗告訴訟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行政審判法上의 行政審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즉 行政審判을 청구한 사례도 稀少할 뿐만 아니라 受刑者의 行政審判을 認容裁判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재준, 수형자의 권리구제제도, 김동원교수학간기념논문집(1991), 800면, 897면 참조.

3) Vgl. 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Bd. I., 3. Aufl.(1923), S. 101 ff.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1992), 96면 이하.

4) Vgl. Ronellenfisch, Das besondere Gewaltverhältnis ein zu früh totgesagtes Rechtsinstitut, DÖV 1981, S. 933 ff. 김남진, 행정법 1, 151면 이하.

5) KG, NJW 1968, 672. 당시의 관계에 대한 소개는 Schüler-Springorum, Strafvollzug im Übergang. Studien zum Stand der Vollzugslehre(1989), S. 19 ff., 30 ff., 45 ff. 참조.

受刑者의 法的地位의 설정이라는 行刑立法論은 特別權力關係理論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形式的·內容的 歸結에 이른다.

먼저 受刑者는 국가와 특별한 예속과 의무관계 속에 놓여 있으므로 그에 대한 권리의 제한은 법률을 통한 규율이라는 형식상의 범죄국가적 요청으로부터 자유롭다.6) 나아가 그의 권리의 제한의 내용과 범위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형벌목적 및 行刑의 過程로부터 직접 도출되므로, 그러한 過程과 목적은 동시에 내용적으로 行刑上의 모든 조치에 대한 根據規範이자 限界規範이 된다.7) 그 때문에 당시의 受刑者는 責任相殺, 應報, 贖罪, 公共의 保護 및 犯罪者의 再社會化 등과 같은 그때 그때마다 상이한 刑罰 및 行刑의 目的들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권리의 제한을 (法律의 留保 없이) 감수해야만 했다.8)

### 2. 舊西獨 聯邦憲法裁判所判決

獨逸에서 受刑者의 法的地位에 관한 실질적 분석의 길은 基本權制限에 관한 憲法 및 行政法의 연구성과에 의하여 소위 特別權力關係理論이 철저히 비판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10) 특히 法律의 留保理論의 적용에 의하여 憲法上의 基本權은 그것이 法律을 통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는 한, 자유시민과 마찬가지로 受刑者에게도 보장된다는 인식이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11)

현행 獨逸行刑法의 생성과 이를 통한 受刑者의 法的地位에 관한 이론적·실제적 발전에 결정적 공헌을 한 것은 1972년 3월 14일12)과 1975년 10월 29일13)의 聯邦憲法裁判所 判決이었다. 1972년의 사안은 受刑者가 교도소장과 직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외부에 보내고자 하였으나, 교도소 당국이 內規에 의거하여 그 편지를 검열·압수하였다. 당해 受刑者는 위 사건을 관

6) Müller-Dietz, Grundfragen des strafrechtlichen Sanktionensystems(이하에서는 Grundfragen으로 표기)(1979), S. 131.

7) Müller-Dietz, Strafvollzugsgesetzgebung und Strafvollzugsreform (1970), S. 74.

8) Vgl. Müller-Dietz, Grundfragen, S. 132.

9) Dazu vgl. R. Pletzner, Der Vorbehalt des Gesetzes, JA 1973, 339 ff., 343 f.; J. Pletzner, Vorrang und Vorbehalt des Gesetzes, JuS 1979, 710 f., 712 ff.; H. Faber, Verwaltungsrecht(1987), §13 IV.

10) Vgl. Würtenberger, Reform des Strafvollzugs im sozialen Rechtsstaat (1987) in: Würtenberger, Kriminalpolitik im sozialen Rechtsstaat(1970), S.191 ff., 197 ff.; Schüler-Springorum, Strafvollzug im Übergang, S. 61 ff.

11) Müller-Dietz, Grundfragen, S. 132.

12) BVerfGE 33, 1.

13) BVerfGE 40, 276.

할 행정법원에 제소하여 폐소한 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승소판결을 얻었다. 이 때 同裁判所는 판결을 통해 비록 受刑者라 할지라도 그의 基本權은 오로지 법률을 통하거나 법률의 기초 아래에서만 제한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으며, 이후 1975년의 同裁判所決定도 그러한 입장을 거듭 확인하였다.

동시에 1972년의 헌법재판소판결은 상술한 法治國家原則의 요청 외에 "그 제한이 오로지 基本法(GG)의 가치질서가 수호하고 있는 共同體的 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어야 한다"14)고 하여 그 내용적 한계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그 점과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15)는 受刑者의 權利의 制約限界를 위한 실질적 척도를 基本權 條項(Art 1~19 GG)과 社會國家原則(Sozialstaatsprinzip, Art 20, 28 GG)에서 이끌어 내면서, 동시에 受刑者의 再社會化(내지 사회적 편입)를 自由刑 執行의 궁극적 목표로 정립시킨다. 즉, 行刑의 課題는 受刑者의 再社會化를 위한 토대의 장설에 있으며, 그와 같은 目的의 實現으로 지향된 (國家의 處우배려의) 요청은 먼저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基本法 제2조 제1항(人格의 自由로운 發展)이 人間尊嚴의 不可侵性(Art 1 GG)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개인의 基本權을 형성"16)한다. 또한 그 점은 共同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社會國家原則에 따른 당연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社會國家原則은 개인적인 약점·무능력 또는 불리한 사회적 여건 등의 사유로 개인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성원(또는 그룹)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후생을 내용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약자그룹에는 受刑者와 복역 후 석방된 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만 하며, 중구적으로 그를 통한 犯罪者의 累犯化 防止는 共同體 自身의 利益과도 직접 상통"17)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同裁判所는 受刑者의 再社會化를 目標로 구성되어야 할 行刑의 具體的 形體로서 "(行刑) 受刑者의 개별적 특성에 상응한 작용을 통하여 그가 장래 자유롭고 정상적인 삶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內·外的 條件들을 모색·형성시켜 줄 것"과, "(국가)는 이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을 재정적·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공해야만 한다"18)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行刑은 교육적·사회적 그리고 의료적 원조 등과 같은 포괄적 조력을 통해

14) Vgl. BVerfGE 33, 1.

15) BVerfGE 35, 202(235).

16) BVerfGE 35, 236. 헌법재판소는 그후의 판결(NJW 1977, 1525 ff)을 통해 (심지어) 無期刑을 선고받은 受刑者에게도 자유로운 삶의 형성에도 지향된 再社會化를 위한 처우를 배주어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다.

17) BVerfGE 35, 236

18) Vgl. BVerfGE 40, 284.

社會化를 향한 受刑者의 自發的 動機誘發과 그에 반하는 外部的 장애요인들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거하는 形體를 갖출 것19)과 그를 위한 (급부)처우가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함으로써 受刑者의 地位의 확립에도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受刑關係에 관하여 7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기까지 獨逸聯邦憲法裁判所가 내린 이상과 같은 일련의 形式的·內容的 판단은 (1976년 5월 16일 제정되어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獨逸行刑法의 生成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우선 同裁判所判決에 따른 法治國家的 要請은 당시 舊西獨聯邦 行刑法制定의 필요성에 관한 논쟁20)에 중추부를 내렸다. 그리고 그가 내린 내용적 판단은 獨逸行刑法 제2편 제1장에 自由刑執行의 基本原則(Grundsätze im Vollzug der Freiheitsstrafe)21)이란 제목 아래 제2조(行刑의 課題), 제3조(行刑의 形體) 및 제4조(受刑者의 地位) 규정으로 자리잡게 된다.

## III. 受刑者의 地位

受刑者의 權利地位와 處遇의 내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현행 獨逸行刑法 제4조가 마련해 두고 있다. 同法은 제4조 1항에서 受刑者의 자발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제2항은 受刑者가 行刑上 감수해야 할 권리제한의 범주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再社會化 處遇理念과 受刑者의 地位

獨逸行刑法 제4조 1항은 "受刑者는 자신에 대한 處遇의 형성과 行刑目的의 실현에 동참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의 준비자세를 일깨우고 촉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同法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22)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첫째, 行刑法은 受刑

19) Vgl. Müller-Dietz, Grundfragen, S. 134.

20) 그 이전에 관계하였던, 특히 1934년의 行刑令(Strafvollzugsverordnung) 및 기타 개별 州의 行政命令·規則 등의 法規性을 부정하는 것이 유력한 입장이다. 그 점에 관하여는 vgl. Quedenfeld, Der Strafvollzug in der Gesetzgebung des Bundes und der Länder(1971), 123 f.; Schüler-Springorum, Strafvollzug im Übergang, 70; Callies/Müller-Dietz, Kurzkomentar zum StVollzG, 4. Aufl.(1986), Einleitung Rdn. 10.

21) 獨逸行刑法 제2조는 "受刑者의 再社會化를 行刑의 目標로 설정한 후, 제3조 1항에서 수형중의 생활을 가능한 한 일반적인 생활상태에 접근한 형태를 갖춰 줄 것, 2항에서 자유박탈에 따른 유익한 결과의 제, 그리고 3항에서 刑執行은 受刑者의 자유생활에의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행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후술하는 III. 受刑者의 地位 참조.

22) Müller-Dietz, Grundfragen, S. 138.